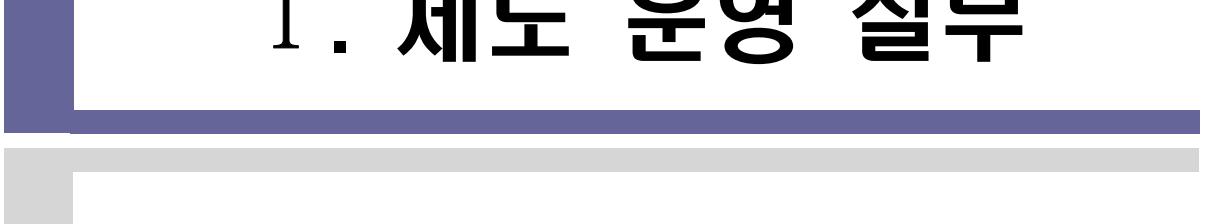


2007년 방재 실무 혁신워크숍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실무

2007.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방방재청



# I. 제도 운영 실무



# I. 제도 운영 실무

## 1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일반

### 1. 제도 도입배경

우리나라 최근 10년간(1994~2003년) 자연재해 피해현황을 분석해보면, 사망 1,367명, 이재민 266,373명, 건물, 농경지, 공공시설 피해 등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16조 7천억 원(연평균 1조7천억)에 이르고 있다. 재해 발생 원인별 재산피해 발생비율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59%, 호우 23%, 호우·태풍 11% 등으로 풍수해에 의한 피해가 93%에 달하고 있다.

표 1.1 최근 10년간 원인별-연도별 자연재해 총괄(1994~2003년)

원인 연도	태풍	호우	대설	폭풍	호우·태풍	폭풍설	기타	합계 (천원)
1994년	20,490,339	90,152,250		367,157		37,892,194	4,472,889	153,374,829
1995년	91,896,337	28,540,041		24,463,319	456,252,049			601,151,746
1996년		442,259,605	1,089,778	3,825,013		35,577,662	298,324	483,050,382
1997년	10,463,306	128,783,637				20,959,478	30,708,092	190,914,513
1998년	274,871,814	1,264,168,822		4,880,504		32,906,627	5,983,071	1,582,810,838
1999년	85,348,781	70,241,460			1,049,048,782	15,042,076		1,219,681,099
2000년	146,249,050	247,152,145			252,049,858			645,451,053
2001년		459,731,489				796,436,079		1,256,167,568
2002년	5,185,728,330	929,564,278						6,115,292,608
2003년	4,233,391,426	174,849,518						4,408,240,944
합계	10,048,439,383	3,835,443,245	1,089,778	33,535,993	1,757,350,689	938,814,116	41,462,376	16,656,135,580

※ 피해액은 당해연도 기준임

우리나라 풍수해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의 기상학적 및 지형학적 특성에 기인하지만, 이 외에도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재해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위험성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더욱 가중될 것이 자명하므로 개발로 인한 재해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개발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재해영향요인을 개발사업 시행이전에 예측·분석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시행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재해 예방차원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위한 것이 1996년 6월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재해영향평가제도이다.

그러나, 1996년 재해영향평가가 실시된 이후 지속적인 보완에도 불구하고 편법적 개발행위 및 제도 자체의 한계로 인하여 보다 광역적인 방재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게 되었다. 기존의 재해영향평가제도의 대상 사업의 범위는 6개 분야 24사업으로 대상의 범위가 모든 개발에 대한 방재계획을 포함하기에는 부족하며, 개발사업만을 대상으로 포함하였을 경우 개발계획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방재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4년 국가재난관리 전담조직인 소방방재청 신설과 2005년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하여 개발과 관련된 계획에 대하여 방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려를 반영하기 위한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는 기존의 재해영향평가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과 관련된 계획의 초기 단계(행정계획)에서부터 방재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협의제도의 주요내용

### 가. 관련 규정

표 1.2 자연재해대책법 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과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본부장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도지사 및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시·도본부장”이라 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시·군·구본부장”이라 한다)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④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표 1.2 자연재해대책법 내용(계속)

###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실시하여야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2. 산업 및 유통단지조성
3. 에너지 개발
4. 교통시설의 건설
5. 하천의 이용 및 개발
6. 수자원 및 해양개발
7.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8.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9.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획 및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긴급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업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할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①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으로부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결과가 해당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반영된 경우에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표 1.2 자연재해대책법 내용(계속)

### 자연재해대책법

제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 등의 금지)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개발관련 위원회에 방재분야전문가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이하 “개발계획 등”이라 한다)을 심의·의결·자문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에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재해영향성검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재분야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방재분야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함께 추천할 수 있다.

### 표 1.3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내용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3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하는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필요성·추진배경·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행정계획의 수립·확정 등 상세검토가 필요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행정계획의 수립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4.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재해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5.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내용에 대한 검토사항

제4조(검토결과의 통보) 중앙본부장 및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재해영향성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기간을 1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본부장이 구성·운영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는 소방방재청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40인 이상 8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소방방재청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지명하는 자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⑤검토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표 1.3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내용(계속)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p>1.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p> <p>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p> <p>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p> <p>4.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p> <p>⑥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⑦검토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⑧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검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p> <p>제6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그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계획의 경우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중앙본부장,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법령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아 당해 행정계획에 관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본다.</p> <p>②중앙본부장은 제1항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따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제7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결과를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 및 사유를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 나. 사전협의 대상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의 취지가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발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이를 사전에 제거하자는 데 있으므로, 실제로 실시계획을 통하여 개발행위에 들어가는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지구 지정 등을 포함한 개발계획 수립 등의 행정계획을 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제도의 협의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제도 대상사업범위 외에 개발관련 법령을 조사하여 개발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추출하였고, 면접조사 및 각종 개발계획서 분석을 통하여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협의대상은 크게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으로 구분되며, 행정계획은 34개 법령에 의한 48개 사업으로, 개발사업은 40개 법령에 의한 47개 사업으로서 총 95개의 사업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협의대상별 유사성을 고려하여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산업 및 유통단지의 조성, 에너지개발, 교통시설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수자원 및 해양개발,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관광단지개발 및 체육시설 등 8개 분야로 구분하였다.

## 다. 협의기관 및 협의기간

### ① 협의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 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기본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 또는 지역본부장과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협의요청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도지사 및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재난 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 ② 협의 기간

- 중앙 및 지역본부장은 협의요청기관으로부터 협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협의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기간을 1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 라. 협의 절차

### ① 협의요청

-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 또는 사업자는 재해에 관한 영향을 검토한 내용이 포함된 해당 사업계획서를 승인기관에 제출한다.
- 행정기관 또는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은 사업승인기관의 장(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 포함)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하기 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

본부장에게 협의를 요청한다.

- 다만, 행정계획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중앙본부장,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법령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아 당해 행정계획에 관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본다.
-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해 재해영향평가를 받는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

## ② 협의요청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행정기관의 장이 중앙·지역본부장에게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의 목적·필요성·추진배경·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행정계획의 수립·확정 등 상세검토가 필요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 행정계획의 수립 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재해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 중앙본부장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재해경감을 위하여 중점 검토하여야 할 항목으로 고시한 사항

### ③ 협의기관 검토

- 사업승인기관으로부터 재해영향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중앙 및 지역본부장은 개발관련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협의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와 협의시기가 적정한지 등의 기본요건을 검토하고
- 중앙 또는 지역본부장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협의요청 시 포함된 재해예방 및 저감대책 등을 관련부서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다.

### ④ 검토위원회의 구성 · 운영

- 중앙 또는 지역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요청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방재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 · 운영 할 수 있다.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본부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40인 이상 80인 이하(지방위원회의 경우 20인 이상 40인 이하, 필요시 추가) 위원으로 구성 한다
-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소방방재청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지방위원회의 경우 지역본부장)이 지명하는 자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지방위원회의 경우 지역본부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검토위원회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 한다.
  -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 중앙본부장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재해경감을 위하여 중점검토하여야 할 항목으로 고시한 사항
- 지방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 표준(안)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마. 협의결과의 이행 관리감독

-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으로부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결과를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 및 사유를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내용의 이용을 위하여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2

## 검토협의대상에 관한 사항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의 대상은 기존의 재해영향평가제도의 대상과 현재 개발사업과 관련이 있으면서 재해영향평가제도의 대상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개발관련 사업을 선정하여 제도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대상사업선정 방법의 첫 단계로 재해영향평가제도의 대상을 포함 개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대상은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최종결정 하였으며, 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각종 개발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를 분석하여 재해요인을 분석하고, 대상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의 95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은 대상사업별 연관성을 분석하여 8개 관련 분야로 구분하였으며,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따라 다시 분류하였다.

현재 포함된 대상사업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개발과 관련된 사업 및 개발로 인한 재해유발 및 가중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업을 포함시켰다고 볼 수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반영 하였다.

## 행정계획

표 2.1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대상사업 및 협의 시기

협의 대상	행정계획의 범위	협의 시기
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 시의 개발	(1) 「국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국토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종합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4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개발계획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7)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진흥개발계획	개발계획 수립 전
	(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지정 전
	(9)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지정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10) 「농어촌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정비계획 수립 전
	(11) 「농어촌정비법」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	개발계획 수립 전
	(12)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13) 「도서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개발사업계획	사업계획 수립 전
	(14)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환경개선 지구의 지정	지구 지정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15) 「오지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지구의 지정	지구 지정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협의 대상	행정계획의 범위	협의 시기
나.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단지 지정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의 지정	단지 지정 전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	단지 지정 전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의 지정	지정 전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 시)
	(6)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지정	단지지정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지정 전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 시)
다. 교통시설의 건설	(1) 「철도건설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기본계획	기본계획 수립 전
	(2) 「도시철도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기본계획	계획 확정 전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 시)
	(3) 「농어촌도로정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계획	정비계획 수립 전
	(4) 「항공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기본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5)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기본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라.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댐건설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또는 승인 전
	(2) 「하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3) 「소하천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계획 승인 전
	(4) 「소하천정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중기계획	계획 수립 전

협의 대상	행정계획의 범위	협의 시기
마. 수자원 및 해양개발	(1)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어촌·어항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개발계획	계획 수립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3) 「항만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 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	계획 수립 전(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4)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관계 시·도지사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바.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촌진흥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산촌진흥계획	계획 수립 전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산촌진흥계획	계획 수립 전
	(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조성계획	계획 승인 전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묘지 등의 수급계획	계획 수립 전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묘지 등의 수급계획	계획 수립 전
	(7)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	채광계획 인가 전
	(8) 「광업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개발계획	계획 수립 전
사.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1) 「관광진흥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 시)
	(2)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지정	지정 전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지정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수련지구조성계획	계획 승인 전

## 개발사업

표 2.2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대상사업 및 협의시기(계속)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협의 시기
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전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6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5)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전
	(6)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7)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 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8)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설치 공사	학교설립 인가 전
	(9)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조성계획 결정 전
	(10) 「농어촌정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계획	시행계획 수립 전
	(11) 「농어촌정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 계획	시행계획 승인 전 또는 수립 전
	(12)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도읍개발사업	개발사업 시행 전 또는 승인 전
	(13)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사업계획 확정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14) 「오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 계획	개발계획 수립 전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협의 시기
나. 산업 및 유통 단지조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공장설립 승인 전
	(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6)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	공사시행 인가 전
	(7)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8)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센터 지정 전
	(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 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다. 에너지 개발	(1)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계획 승인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사계획	공사계획 승인 전
라. 교통시설의 건설	(1)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2) 「도시철도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3) 「농어촌도로정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4)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공사 시행 전
	(5) 「항공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 (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실시계획 승인 전
	(6)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 (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실시계획 승인 전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협의 시기
마.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 「소하천정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시행계획 수립 전
바. 수자원 및 해양개발	(1) 「어촌·어항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개발사업계획	사업계획수립 확정 전 또는 허가 전
	(2)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	실시계획 수립 전 또는 승인 전
	(3)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4)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전
사.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치(4km 이상)	임도 설치 전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촌개발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3)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 허가(하천골재에 한함)	허가 전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의 설치	묘지 설치 전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의 설치	묘지 허가 전
	(6) 「석탄산업법」 제39조의9의 규정에 의한 탄광지역 진흥사업계획	사업계획 확정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7) 「산지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채취 허가 전
아. 관광단지개발 및 체육시설	(1)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조성계획	조성계획 승인 전
	(2) 「관광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4) 「온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	개발계획 승인 전

※ 어촌·어항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 법률사항임.

## 1. 도시기본계획

### 협의 대상

#### ● 근거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도시기본계획의 승인)

#### ● 협의대상

- 20년 단위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 5년 단위 도시기본계획의 정비로 인한 변경
- 도시기본계획 수립 사항의 변경

#### ● 협의권자

- 건교부장관이 승인하는 도시기본계획(변경)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
- 시·도지사 승인하는 도시기본계획(변경)의 경우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3.31>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2. 도시관리계획

### 협의대상

#### ● 근거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 협의대상

- 10년 단위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 도시관리계획 수립 사항의 변경
-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 제1·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

#### ●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법 제30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행령 제25조제3항, 제4항 및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되는 경우)

#### ● 협의권자

- 건교부장관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
- 시·도지사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의 경우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
-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의 경우 사·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생 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 생략

② 생략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3.9.29, 2004.1.20, 2005.1.15, 2005.9.8>

1. 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도로의 경우에는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원 및 녹지의 경우에는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3.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4.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

5.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를 농림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6.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7.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④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005.1.15>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5.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1.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①영 제25조제3항제7호에서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5.2.19>

1. 영 제25조제3항제1호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변경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도로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3.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내용중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4. 영 제25조제3항제1호·제2호·제5호·제6호 및 이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또는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5. 영 제25조제4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변경  
②영 제25조제4항제9호에서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5.2.1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출입구의 위치 변경
  2. 영 제45조제3항 각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 3. 개발행위의 허가

#### 협의대상

##### ● 근거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

##### ● 협의대상

- 법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개발행위
- 개발행위의 사항의 변경

##### ●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법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개발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분할(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② 제1항의 규정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생 략
- ④ 생 략

제59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개발행위의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

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1. 제8조·제9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안에서의 개발행위
  2.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
  3.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4.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교통 및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받는 개발행위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4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가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5.9.8>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규모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인 경우
  2.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3. 별표 20 제2호 카목 및 별표 27 제2호 차목(별표 20 제2호 카목의 공장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9.8>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가.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나. 부피 1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2.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나. 부피 50만세제곱미터 이상 1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3. 법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가.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나.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다.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동항제2호 각목의 1 또는 제3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동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발행위의 목적·필요성·배경·내용·추진절차 등을 포함한 개발행위의 내용(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개발행위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할 때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용도지역·기반시설 등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토지이용현황도

3. 배치도·입면도(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 한한다) 및 공사계획서

4.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⑤법 제5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사업 전부를 말한다. <개정 2005.9.8>

## 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 협의대상

#### ● 근거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 ● 협의대상

-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및 변경 인가를 받는 경우

#### ●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법 제8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행규칙 제16조에 해당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자금계획 및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88조제3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1.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행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페센트 미만의 변경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의 변경인 경우
3. 기존 시설의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대수선·재축 및 개축인 경우
4. 도로의 포장 등 기존 도로의 면적·위치 및 규모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의 개량인 경우

## 5.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 협의대상

#### 근거규정

- 도시개발법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협의대상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하는 경우

#### 협의시기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도시개발계획 수립 시

※ 법 제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자연녹지지역, 도시지역외의 지역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도시개발법】

**제4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의2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3.12, 2005.8.5>

#### 1. 자연녹지지역

1의2. 제2조제1항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생산녹지지역

#### 2. 도시지역외의 지역

3. 제2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

4.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본조신설 2003.6.30]

## 6. 도로공사

### 협의대상

#### ● 근거규정

- 도로법 제24조(도로의 공사와 유지등)

#### ● 협의대상

- 도로의 신설·개축

#### ●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도로의 수선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공사
- 도로공사중 변경에 관한 사항

### 【도로법】

**제11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의한다.<개정 1993.3.10, 1995.12.6>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광역시도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제24조 (도로의 공사와 유지등)** ①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도로공사"라 한다)와 그 유지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이를 행한다. 다만, 국도(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 7. 사설묘지의 설치

### 협의대상

#### ● 근거규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 ● 협의대상

-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 허가
- 허가 사항의 변경 (제13조 제3항 및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변경 대상)

#### ●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개인묘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국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당해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

2. 가족묘지 :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

3. 종중·문중묘지 : 종중 또는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

4.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

②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2.4.20>
3. 석축,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족묘지 및 문중·종중묘지에 한한다)
4. 가족묘지등의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

## 8. 토사채취 허가

### 협의대상

#### ● 근거규정

- 산지관리법 제32조(토사채취허가 등)

#### ● 협의대상

- 토사채취 허가
- 허가 사항의 변경(시행규칙 제31조제2항 제1호, 제6호)

#### ●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법 제32조 제2항, 제5항(신고사항)  
※ 산지관리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 【산지관리법】

**제32조 (토사채취허가 등)** ① 산지안에서 토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사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지안에서 객토용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토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생 략

④ 생 략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사를 굴취·채취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한자가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신고를 한자가 석재의 굴취·채취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토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산지에서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토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 미만의 토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토사채취허가의 신청 등) ① 생 략

②법 제32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2.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5.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6.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사채취량의 증가

## 9. 등록체육시설 사업계획

### 협의대상

#### ● 근거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 ● 협의대상

- 등록체육시설 사업계획
- 등록체육시설 사업계획의 변경

#### ●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
- 법 제12조 후단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1999.1.18>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법 제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0.1.28>

1.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상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부지의 면적 및 경계를 변경함이 없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의 시설물설치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회원모집의 예정인원 및 입회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시설설치공사의 착공예정일 또는 준공예정일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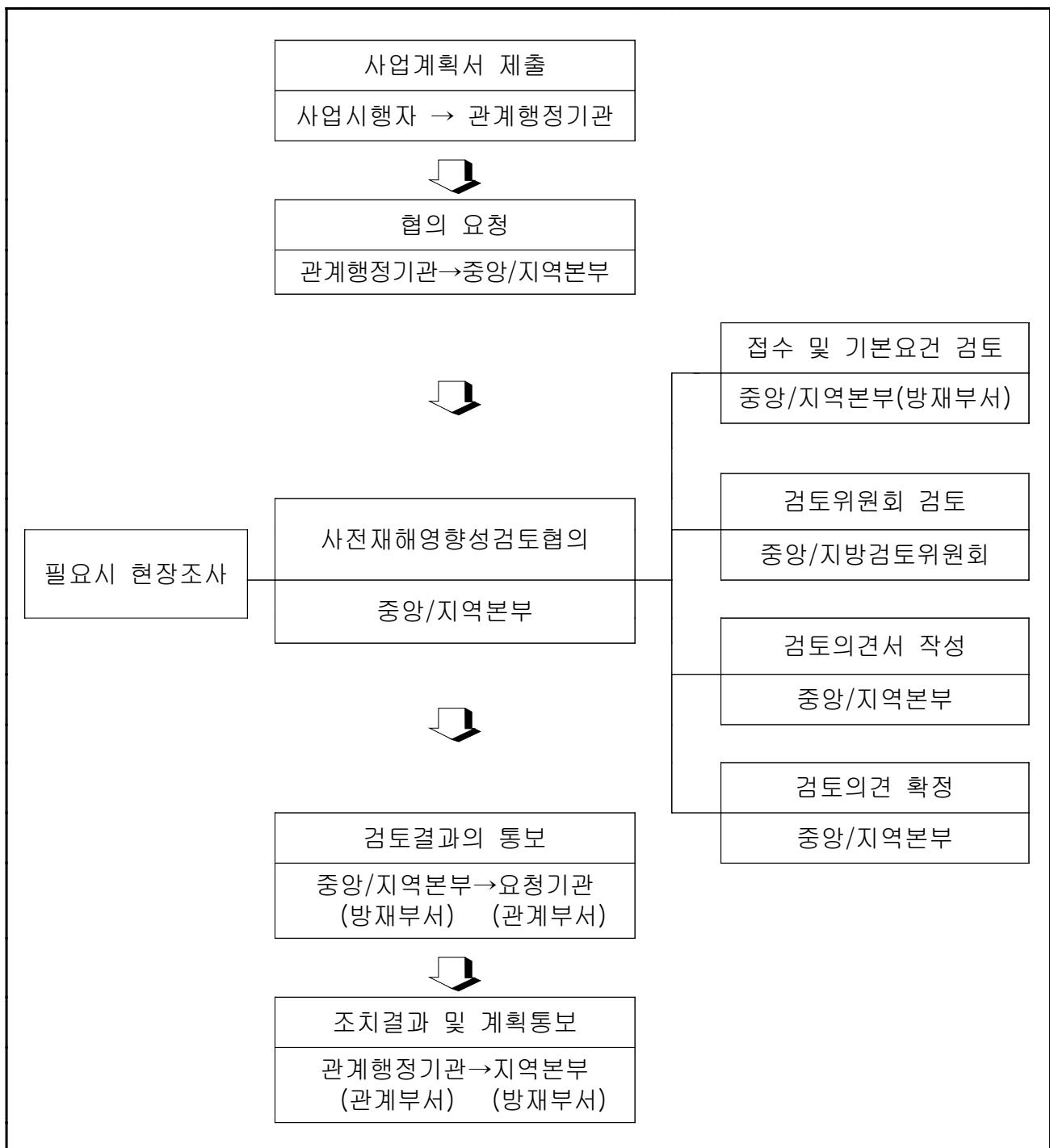
제1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개정 2000.3.28>) ① 영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의 시설물설치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물설치의 변경을 말한다.<개정 1996.5.30, 2000.3.28>

1. 필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연건축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에서의 증축·개축 또는 변경
2. 임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의 증축·개축·이축·재축 또는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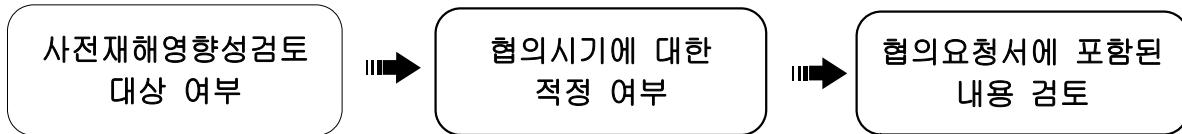
### 3

## 협의요청서 기본요건 검토

### 1. 협의절차



## 2. 기본요건 검토



### 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대상 여부

#### ① 협의대상(95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여부 확인

- 관련 법률(관계 조항)에 의한 협의대상임을 검토

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의 지정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 ② 변경을 수반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대상여부 확인

-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변경에 관하여는 해당법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대상 유무를 검토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의 경우

【제56조 제2항】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예)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  
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의 경우

【제13조 제1항】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에도 또한 같다.

### ③ 개별법령에서 제외되는 대상(경미한 사항) 여부 확인

- 허가 · 승인 등에서 해당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나 신고사항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에서 제외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경우

【제30조 제5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예)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의 경우

【제13조 제1항】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재해영향과 전혀 관련 없는 승인 · 허가 등의 대상여부 확인

-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 · 허가 등은 사전검토협의대상이나 재해영향과 관련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협의대상에서 제외

#### 〈 예 시 1 〉

##### ○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도로 공사의 경우

###### — 제24조 (도로의 공사와 유지등)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와 그 유지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이를 행한다. 다만, 국도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 재해영향과 관련된 사항이 없는 수선 및 유지관리는 사전 협의 대상에서 제외

## 〈 예 시 2 〉

### ○ 산지관리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 허가의 경우

#### — 제32조 (토사채취허가 등)

산지안에서 토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사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토사채취허가의 신청 등)

법 제32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2.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5.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6.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사채취량의 증가

⇒ 재해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는 사전 협의대상에서 제외

## ⑤ 대상사업의 규모·면적 등에 따른 대상여부 확인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은 기본적으로 해당 법률이 정하는 규모나 면적에 따른다.

## 〈 예 시 1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공장승인신청

#### — 공장 건축면적이 500m<sup>2</sup>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및 변경하는 경우

###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 허가

#### — 1천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 30세제곱미터 이상 1천세제곱미터 이하는 신고사항으로 제외

## 나. 협의시기에 대한 적정 여부

### ①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하고 있는 협의 시기 확인

-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협의시기

예) 「소하천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경우  
⇒ 계획승인 전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경우  
⇒ 실시계획인가 전

### ②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부칙 제3항의 적용범위 확인

- 동 제도 시행일('05.8.17)을 기준으로 시행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부터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05.8.17일 이후 수립되거나 인·허가를 득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변경 포함) 모두 적용됨

#### 〈 예시 〉

-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안) 결정(시·도지사, 장관 결정시)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부칙 제3항 규정에 의거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행정계획부터 적용한다」는  
⇒ 동법 시행령 시행일인 '05. 8.17일 이후부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기 위하여 입안권자가 결정 권자에게 신청한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
- 도시관리계획(안) 결정(입안권자와 결정권자가 동일)
  -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와 결정권자가 동일한 경우 입안 확정일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위하여 관련 실·과 협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

## 다. 협의요청서에 포함된 내용 검토

###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

#### 협의요청서에 포함할 내용

- 사업목적 · 필요성 · 추진배경 · 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
-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
- 행정계획의 수립 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내용에 대한 검토 사항

### ② 중앙본부장이 고시한 중점검토항목에 대한 검토여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한(2005-18호, '05.12.30) 사전 재해영향성검토협의 중점 검토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 (미반영시에는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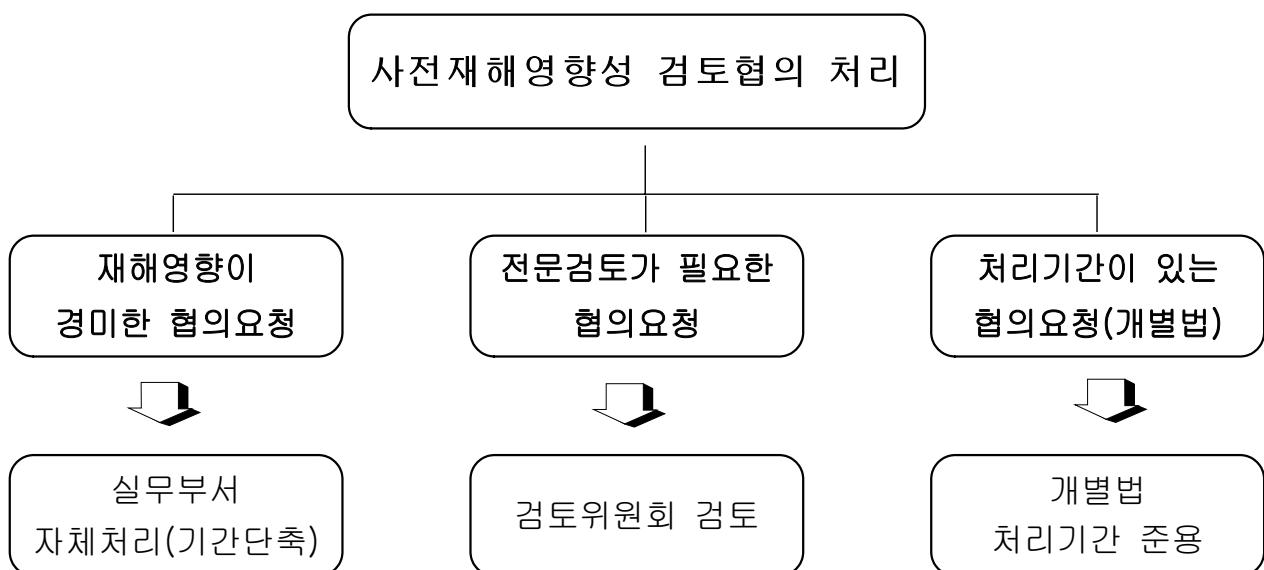
#### 〈 예시 〉

- 00시 도시기본계획(안) 협의('06년 3월)
    - 기본계획(안)에는 방재 및 안전계획 부문에 일반적인 방재 계획만 나열되어 있고 화재, 범죄, 교통사고 대책만 나열
  - 00 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안) 협의('06년 1월)
    - 과업의 개요, 관련계획검토, 교통수요예측 등만 제시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중점 검토항목 및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협의요청기관에 보완 통보하여 조치

## 4

## 협의처리기간의 운영(권장)

### 1. 협의처리기간의 탄력적 운영



#### 가. 재해영향이 경미한 협의요청 건

- 협의요청건에 대하여 검토위원회 의뢰여부와 자체검토가 가능한 여부를 판단하여
  - 사업의 내용이 일부변경 등 재해영향이 경미한 협의요청건에 대하여는 가능한 자체 검토처리하여 조속한 협의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는 별도의 절차를 이행하는 제도가 아니라 승인·허가 등을 하는 과정에서 재해영향에 관한 검토사항을 포함하여 협의하는 제도로서 사안에 따라 재해영향이 경미하거나, 전문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협의요청서를 처리해야 하므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나. 전문검토가 필요한 협의요청건

-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협의요청건에 대하여는 검토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30일 이내 협의 처리
- 가능한 지역본부의 전자우편 등 정보공유매체를 이용하여 협의요청 서류의 배송기간 절감 등 처리기간을 단축

## 다. 처리기간이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요청 건

- 개별법에서 행정기관 간(부서간) 협의처리기간을 명시한 협의요청건에 대하여는
- 가능한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리기간을 준용토록 운용
  - ※ 개인이나 중소규모의 영세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한 협의 대상사업(공장설립, 묘지설치 등)에 대하여는 고객 중심 차원에서 처리기간을 단축 운용
    - 예)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의 경우  
⇒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서 등을 교부
    - 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사설묘지의 설치 허가  
⇒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의 설치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허가서를 교부

## 5

# 공장설립 승인관련 협의 운영

## 1. 현황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시(시장·군수·구청장) 재해영향에 관하여 사전협의

### 【승인대상】

- 공장건축면적이 500m<sup>2</sup>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
- 500m<sup>2</sup> 미만이라도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의제 받을 시
- 공장설립 승인 사항을 변경시(대표자변경 및 20% 면적 증가)
- 공장설립 완료 후 부지 및 건축면적 변경시(1m<sup>2</sup>이상 증가도 대상)

※ 협의권자 : 시·군·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 2. 문제점

### 가. 사전협의 대상에 관한 사항 (작은 내용까지 승인대상으로 규정)

- 공장설립 완료 이후에 면적이 단 1m<sup>2</sup>이상의 증가도 증설에 해당되어 변경승인사항이므로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
- 부지면적 변경 없이 건축면적만 증가하여도 협의대상
- 자연재해영향이 없는 업종변경도 협의대상
- 산업단지 등 부지조성이 완료된 용지에 설립 시에도 협의대상

### 나. 제도운영 및 처리기간에 관한 사항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요청서 작성에 경제적 부담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에 따른 승인 처리기간 지연
  - 공장설립 승인 : 20일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처리 : 30일

### 3. 개선조치

중소규모 공장설립에 대하여는 재해영향성을 충분히 검토하되 중소기업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없는 방안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대상 및 처리방법을 개선조치 하였음.(‘06. 5월)

#### 가. 협의 대상 범위 최소화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대상(500m<sup>2</sup>이상 신·증설)중
  - 공장 증설은 부지면적이 당초 설립승인 받은 면적의 20%를 초과할 경우에만 협의대상 적용
  - 건축면적 변경, 부대시설 변경, 업종변경 등 재해와 관련이 없는 변경 승인 사항은 협의대상에서 제외
  - 신고사항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
- 부지조성이 완료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 단지 및 농공단지내 공장용지에서의 공장설립을 승인할 경우에는 협의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특별히 재해영향검토가 필요시는 협의

#### 나. 협의 방법 개선

- 부지 면적 1만m<sup>2</sup> 미만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서를 “기본 메뉴얼”화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 대행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서 작성 메뉴얼 : 붙임
- 협의처리 기간을 공장설립 승인에 따른 협의 기간인 10일 이내 처리도록 협의기간 조정
  - 재해검토 협의 30일 ⇒ 공장설립 승인 협의기간 10일

[붙 임]

공장설립 승인과 관련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서**

2007. . .

회사명 :

대표자 :

## 1. 사업 개요

### 가. 기본사항

업체 현황	회사	명 청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배경 및 목적	사업목적의 배경 및 목적을 명확하게 명시			
필요성				
사업규모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지면적 :      m<sup>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면적 :      m<sup>2</sup>(제조시설 :      m<sup>2</sup>,      부대시설 :      m<sup>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기간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요예산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내용 :</li> </ul>			

## 나. 사업추진 계획

### ① 사업추진 절차

- 현재까지 추진상황
- 향후 추진계획

### ② 공사계획(세부적)

구 분(일자)	토목공사	건축공사	비고
예) 2007. 3. 11	예) 배수로공사	예)건축설계	

### ③ 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 목	지 적(m <sup>2</sup> )	사용면적	잔여면적	비고

### ④ 점용내역

점용명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m <sup>2</sup> )	점용면적	잔여면적	비고
예) 구거							
하천							
도로							

\* 점용이 없을 경우는 생략

## 2. 사전재해영향검토 자료

### ① 지역현황

- 가. 위치
- 나. 지형
- 다. 기후

※ 사업대상 위치도(1/25,000 지도에 표기)

### ② 기상현황(최근 5년)

연도	기온			강수량	강수일
	평균	최고	최소		

### ③ 지형분석

- 지형개요(주변지역을 개괄적으로 설명)
  - 예) 행정구역상 ○○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방도 ○○호변에 위치 전방에는 ○○산이 위치하고 높고 ○○m에 위치
- 사업 대상부지 현황 사진
  - 주변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 가능한 현황사진(파노라마식으로 촬영하여 첨부)
  - (해당지역의 법면 등 중요부분 사진 첨부)

### ④ 시설물 배치 및 배수처리 계획

- 사업 부지내 시설물 배치계획
  - 공장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한 배치계획 첨부
- 배수처리계획
  - 피해방지 계획서 및 관련 도면첨부(규모에 따라 적정한 축적으로 표기)
  - 배수처리계획 도면(규모에 따라 적정한 축적으로 표기)

## ⑤ 사면경사 현황도

- 산지 전용허가 등 등고차가 15°이상인 경우와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작성
  - 공사의 계획 및 방지에 관한 사항 기술 (사면경사 현황도 첨부)

## ⑥ 침수발생 현황 조사

- 대상지구 및 인접지역에 대한 침수현황 조사
  - 대상지구 및 인접지역에 대한 하천·소하천 현황 조사
  - 대상지구 및 인접지역에 대한 재해위험지구(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현황 조사
- ※ 인접지역 : 읍 · 면 · 동 단위

## ⑦ 최근 5개년도 재해 여부

연 도	재해명	피해총액	인명피해	건물피해	농경지	기타
	홍 수					
	산사태					
	기타재해					

\* 홍수피해가 없을 경우는 없음으로 표시

## 3. 재해영향의 예측

### ① 재해영향예측 대상

- 예측항목
  - 강우량에 따른 재해 가능성 여부
  - 사업의 시행에 따른 지형의 변화, 사면의 발생, 토량의 발생

- 예측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을 예측범위로 선정

- 예측방법

- 예상되는 재해영향을 현장 확인 및 문헌 등을 참조하여 예측
  - 개발계획과 유사사업 관련 자료 이용

## ② 사업시행에 따른 재해유발 요인

- 지형의 변화

- 공장건설에 따라 변경되는 토지형태를 자세히 기술
    - 절토, 성토 등을 하여 변화되는 지형의 변화를 기술
    - 절토, 성토 공정에 따른 사면발생 여부 등
- 예) 계단식 농경지로 계획표고 ○○m를 유지하기 위해 성토작업실시하여  
공장부지 조성시 남측경계선을 타라 ○○의 성토에 따른 사면발생 예측

- 토량 발생량 및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

- 공사로 인한 토량 발생량( $m^3$ )
  - 터파기, 배수시설 건설 등 사업시행시 강우로 인한 토사 유출가능성 분석 및 하천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재해영향 검토

- 연약지반에 대한 영향

- 공사지역의 연약지반 여부 및 지층상태 기술(해당없을 경우 생략)
  - 필요시 지질조사 실시결과 포함

- 강우량(홍수)에 따른 재해영향

- 해당지역의 강우량, 홍수 등 기타재해 여부를 조사하여 분석

## 4. 저감방안

### ① 지형변화에 따른 재해저감계획

- 지형변화로 인한 재해저감계획 기술(변화 없을 경우 생략)
- 

### ② 집중호우에 따른 배수처리계획

- 필요시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계획  
예) 가배수로의 지형을 고려하여 배수로를 설치하며, 우수의 흐름이 꺽이는 부분 등 적정위치에 집수정 설치
- 

### ③ 공사중 토사유출 방지대책

- 토사발생에 따른 유출방지 대책(임시 침사지 설치 등)  
예) 토공사는 우기를 피하여 작업하고 구역별로 단계별로 시공하여 다량의 토사이동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 ④ 사면(법면) 보호 대책

- 사면발생을 대비한 안정처리 대책 기술  
예) 성토부 상단으로 축구를 설치하고 부지 가장자리에는 U형 축구를 이용한 배수로를 설치하고 도로에서의 조망차단을 위해 차폐용 수목을 식재
- 사면안정보호시설(옹벽, 축대 등)의 설치계획

### ⑤ 기타 공장설치에 따른 인접지역 자연재해안전대책

- 공장설립으로 인하여 발생우려되는 주변지역 재해영향 검토 및 대책  
예) 공장설립에 따른 주변 농경지 및 각종 시설물 등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검토하여 저감대책을 제시(해당없을 경우 제외). 끝.

## 1. 검토위원회 구성

###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 관련규정

#####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

- 중앙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 · 운영 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

-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본부장이 구성 · 운영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소방방재청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40인 이상 8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소방방재청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지명하는 자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위촉하는 자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위원회 위촉 현황

○ 위원장 : 방재관리본부장(당연직)

○ 위촉위원 : 75명

- 엔지니어링 업체 등 업계 : 31명(41%)
- 연구기관 : 16명(21%)
- 대학교 교수 : 12명(16%)
- 국영기업체, 공단 : 11명(15%)
- 여성가족부 추천 : 5명(7%)

○ 지명위원 : 4명(자연재해 업무담당부서의 장)

### < 분야별 >

계	국토 계획	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교통 건설	하천 개발	해양 개발	산지 개발	체육 시설
76	18	12	8	12	6	6	7	6

### < 전공별 >

계	수자원	토질		도로 · 공항		상 · 하수도	농업 토목	철도	시공	구조	산림		방재 (청)
		기초	지반	도로	공항						산지	사방	
76	26	4	2	2	1	3	3	2	5	1	3	1	5
	도시 · 지역계획					안전				항만		에너지	
	도시	국토	농촌	입지	설계	건설	전기	철도	댐	해안	연안	배전	원자력
	4	1	1	1	1	1	1	1	1	3	1	1	1

### < 기관별 >

계	학계	공사, 공단	연구기관	업계	당연직 등	여성부 추천
76	13	10	14	29	5	5

## 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 관련규정

####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

- 지역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함.

#### ○ 지방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을 위한 운영 조례표준(안)

-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음.
-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
-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함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 다. 조례 제정 및 위원회 위원 위촉

- 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해서는 지방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 완료하고, 검토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 지방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표준(안)에 따라 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을 완료

※ 소방방재청 재해영향관리팀- 240호(2005.10.5)

- 위원회 구성은 현지 여건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지역의 전문가를 우선하여 위촉
- 지역 전문가가 부족하여 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한정하지 말고 각종 정보매체를 통하여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 위원회 운영은 서면검토를 위주로 하므로 타 지역 위원 선정 등에 따른 협의 자연이나 불편 등을 거의 없음
- 검토위원 구성은 가능한 실무에 밝은 전문가들로 구성(업계 전문가, 연구원 등)토록 하고, 분야별 구성위원 수는 지역본부의 협의요청 건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배분

## 2. 검토위원회 운영

###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 관련규정

#####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

- 중앙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규정(소방방재청 예규 제31호)

- 위원회의 회의는 영 제5조 제1항에 정한 위원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요청서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6조 각호를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 의견을 종합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
-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검토비 건당 50,000원)

## 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 관련규정

####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

- 지역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 지방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을 위한 운영 조례표준(안)

-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
-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서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함
-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서에 대하여 검토위원 검토사항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
-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 다. 지방검토위원회 운영

- 위원장은 기일내 제출된 검토의견을 취합,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반영 및 미반영 여부를 판단하고, 지역본부장에게 검토결과를 보고 【예시 3】 참조
- 검토의원이 용역 등 기타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 협의검토에 참여를 금지
- 검토의견이 없는 위원의 수당지급은 가능한 배제하여 내실 있는 의견을 제출도록 독려
- 제도 인식부족으로 협의요청서에 대한 내실 있는 검토의견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하여 적극 유도
- 위원들에게 중앙본부 및 타 지역본부의 검토의뢰 상황 등을 수시로 소개함으로서 폭넓은 검토의견의 정보 공유
- 검토위원회 운영은 협의요청건별로 무조건적인 검토위원회 의뢰를 배제하고 사안에 따라 재해영향이 경미한 사항, 전문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탄력적 운영
- 검토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2005. 9)에 있는 검토의견서 서식을 준수하여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검토의견서 양식을 임의로 변경하여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예시 1, 2】 참조

〈 예 시 1 〉

◆ 행정계획일 경우

○○계획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서

1. 총괄의견

2. 세부검토의견

3. 기타의견

상기와 같이 ○○계획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검 토 자 (인)

○○시군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장 귀하

## 〈 예 시 2 〉

### ◆ 개발사업일 경우

#### ○○사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서

##### 1. 총괄의견

##### 2. 분야별 검토의견

○ 토질 · 지반분야

○ 수리 · 수문분야

○ 기타분야

##### 3. 기타의견

상기와 같이 ○○사업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검 토 자 (인)

○○시군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장 귀하

< 예시 3 >

## ◆ 검토위원 의견서 취합 정리

위원명	검토의견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이OO (수리 수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정지구에 대한 재해위험성 분석을 통한 재해예측이 필요-----여</li> <li>- 인접하천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지역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방재기본방향 -----여</li> <li>- 예정지구내의 방재계획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문현조사, 사례조사 등을 통한 투수율, 녹지율 확보 목표치 등 지표 -----여</li> <li>- 개발예정지구의 지질조사 등을 통한 연약지반 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책-----여</li> <li>- 00천과 00천의 계획홍수위 현황을 조사하고, -----여</li> <li>- 예정지구의 지반고와 비교하여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지역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성토고 계획 등 취약지구에 대한 -----여</li> <li>- 저감대책의 경우 기존 재해영향평가 등을 통해 각 방안에 대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본방향 -----여</li> <li>- 서울관측소의 자료만으로 홍수량을 산정하기 보다 인근 지역의 건교부 관할 강우관측소의 자료-----여</li> <li>- 재해현황에 대한 자료의 일관성이 없고, 2004년까지 데이터를 이용하여 현황-----여</li> <li>- 개발 및 실시계획단계에서 인접한 가운지구와 연계한 종합적인 내배수처리계획을 유도-----여</li> <li>- 아파트, 상업지역 등이 저지대에 계획되어 있어, 실시계획 단계에서 단지내에 유출율을 -----여</li> <li>- 개발 및 실시계획단계에서 공원, 녹지등의 효율적 활용 방안과 공공시설 등에 대한 빗물저류시설 -----여</li> </ul>		지정단계에서 반영 곤란

## 1. 협의요청서에 대한 검토의견서 작성

I. 관계법령

II. 협의요청  
개요III. 실무검토  
의견IV. 검토위원  
의견V. 종합검토  
의견

&lt; 예시 &gt;

### I.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 동법 시행령 제6조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및 협의방법 등
  - 별표 1 : 행정계획(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 II. 협의요청 개요

- 건명 : 0000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안)
- 위치 : 00도 00분 00초 00동 일원
- 면적 : 00천 m<sup>2</sup> (00만평)
- 수용인구 : 00인
- 수용가구 : 00세대
- 사업기간 : 개발계획승인일 ~ 2010년 12월
- 사업시행자 : 00공사
- 지정목적 : 본 지구는 수도권 동북부 생활중심기능 수행과 00시의 -----  
-----

### III. 실무 검토의견

#### ■ 주요 검토사항

##### «제출한 협의요청서에는»

00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안) 검토서에 포함된 내용으로는

-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평가대상지역 설정을 -----
- 유역 및 재해현황 조사
  - 기초현황조사, 수문관측소 -----
- 재해예측 및 대책수립
  - 자연재해 예측, 개발-----

⇒ 현 검토서에는 사업지구내의 -----

⇒ 따라서 사업시행자의 제시된 의견과 우리청 및 관련 자료 등을 -----

##### « 주요 검토방향 설정 »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안)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주요 검토방향은(각각 요청된 사업유형별로 설정)

- 예) ① 지구 지정 ⇒ 입지선정을 위한 재해예측 분석과 저감대책  
② 도시계획 ⇒ 개발용지(시가화예정용지 등)의 입지 적정성 분석 및 대책  
③ 실시계획 ⇒ 단위개발 사업시행에 따른 재해예측 분석과 대책  
④ 철도 · 도로 ⇒ 노선선정 및 개발방식의 적정성 분석과 대책

## 가. 기초 및 재해현황 조사결과 검토

### ● 과거 자연재해 현황조사에 대하여는

–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

### ● 검토대상지역의 설정에 대하여는

– 본 검토서에는 예정지 유역 -----

### ● 배수유역 현황에 대하여는

– 개발 전 대상지역의 배수유역체계를 -----

### ● 방재시설 현황에 대하여는

– 개발예정지구 및 인근지역의 -----

### ● 지형현황 조사에 대하여는

– 개발예정지에 대한 -----

### ● 입지의 적정성 조사에 대하여는

–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사전재해-----

## « 결 론 »

⇒ 결론적으로 -----  
-----  
-----

## 나. 재해영향예측 및 분석(현 지구에 대한 문제점)

- 사업대상지내 재해취약지역에 대하여는
  - 00시 관내의 -----
- 사업대상지 인접지역의 재해취약지역에 대하여는
  - 하류부 하천의 재해영향성검토-----
-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는
  - 혁신지구와 R&D지구는 상대적 저지대-----
- 개발예정지구로 인한 하천 및 유역변경 검토에 대하여는
  - 00천의 소하천 유로 변경이 필요-----
- 새로이 수립되는 도로체계 및 교통망계획에 대하여는
  - 수계 변경사항이 발생됨-----
- 관련계획과의 검토에 있어서는
  - 본 사업지구 주변지역-----

### « 결 론 »

- ⇒ 본 검토서에는 개발예정지, 예정지 인접지역 및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재해취약요인 분석 등 사업지구내의 문제점 도출이 미흡 하므로 -----
- ⇒ 개발예정지에 대한 재해영향예측 분석을 통하여 -----

〈 예 시 〉

**다. 입지선정에 대한 재해대책(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

● 00지구의 방재계획으로는

– 00지구는 지형여건이 -----

● 침수 및 재해위험지역 대책으로는

– 본 검토서에는 00천, 00천-----

● 홍수 및 토사유출저감대책으로는

– 개발 중 · 후 저감대책으로-----

● 사면안정대책으로는

– 일반적인 사면안정공법-----

● 투수성 공간 확보대책 및 공원 녹지 등 활용대책으로는

– 재해저감대책으로 -----

⇒ 00지구는 입지적으로 불안정하여 개발예정지에 대한 방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함에 있어 -----  
-----  
-----

〈 예 시 〉

**IV. 검토위원 의견**

○ 서면 검토의견

위원명	검 토 의 견	반영 여부	미반영 사유
김OO (도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00천, 000천 배수구역을 고려한 우수 체계 수립이 -----</li> <li>- 한강 상류지역의 수위를 감안한 00천의 배수 계통을 -----</li> <li>- 가급적 원형지를 유지하는 성토·절토계획 유도</li> <li>- 자연지형(구릉지)을 최대한 보전하는 계획수립을 통한 -----</li> <li>- 재해발생자료는 서울기상청 자료를 사용하였으나, 재해발생 자료로 다소 -----</li> <li>- 주공에서 개발중인 00지구와 00산을 연계한 생태녹지계획 즉 광역적인 -----</li> <li>- 과거 00지구 일부가 상습침수지역이었는데, 00지구 개발시 용량검토가 -----</li> <li>- 저류지 계획(3개소)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규모가 명시되지 -----</li> <li>- 공원, 녹지계획을 명확히 수립하여 투수성공간을 가급적 많이 -----</li> <li>- 국도, 우회도로, 철도 등은 지구를 남북으로 단절시키므로 이에 따른 연계성 -----</li> <li>- 토지이용계획에서 TOD방식을 고려하여 반영하고,-----</li> <li>-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수립 시 과거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 사례결과를 -----</li> <li>- 토지이용계획상 000지구 내 시설 등이 인구 수용에 따른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li> <li>부</li> <li>부</li> <li>부</li> <li>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단계에서 반영 곤란</li> <li>"</li> <li>"</li> </ul>

## V. 종합 검토의견

### ■ 종합의견

- 00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지형여건상 서해안 조위의 영향으로 한강수위가 상승되면서 00천과 사업예정지내의 00천, 00천에 영향을 미쳐-----  
-----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방향은 기본적으로 정확한 기초조사를 통하여 예정지구 입지에 대한 방재 안정성 여부(기초조사)를 우선 -----  
-----
- 그러나, 본 협의요청서는 재해이력, 하천현황, 관련계획 등 기초조사가 개략적인 조사에 그쳤을 뿐 아니라, 재해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내용 또한 단편적인 분석에 그치고 있어 지구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는 매우 미흡하므로 본 검토서의 기초조사, 재해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에 대하여 -----  
-----
  - ① 전반적으로 재작성이 필요-----
  - ② 부분적 보완이 필요-----
  - ③ 본 협의요청서(안)대로 시행 철저-----

## ■ 세부 검토의견

- 000지구는 한강과 임진강의 합류지역에 접하고 있으며, 1998년 00 천 수위상승과 서해안 조위상승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서 과거 재해이력에 대한 -----  
-----
- 개발 전 대상지역의 배수체계를 분석하고 개발 중·후 배수체계에 대한 현황조사(배수유역도 첨부)를 상세하게 하여야 하며 특히, 연접한 00택지개발지구와 00 신도시지구와 연계하여  
-----  
-----
- 00천의 경우 개발단계에서 유로변경이 예상되나, 가능한 유로변경은 지향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개발계획시 유로변경에 대한 타당한 사유와 -----  
-----
- 본 사업예정지와 인접해 있는 배수펌프장(00, 00 1·2)의 시설능력이 개발 후 도시화가 되었을 때 문제가 -----  
-----  
-----

## 〈 예 시 〉

### ■ 기타 검토의견(기술적 의견 및 검토위원 기타 의견)

- 사업지구 면적이 14만9천 m<sup>2</sup>로서 개발후 홍수량이 KS-1, KS-2에서 각각 0.61CMS, 0.1CMS 증가하여 영구저류지의 계획은 토지이용계획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침투시설의 정량적 저감효과-----
- 또한, CN값 산정시 토양도와 토양분류법의 채택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며, AMC 조건의 경우도 무조건 -----
- 본 계획서에서는 B-BL 공동주택지와 녹지 사이에 침투측구 580여 m를 설치한다고 했는 데 -----
- 본 사업지구와 같이 소규모 단지의 경우 대부분 도달시간이 30분 이내이고 임계지속기간도 6시간 이내-----
- 개발 후 토지의 절성토에 따라 축대의 설치가 필수적으로 판단되나, 축대붕괴를 방지-----

## 2. 협의기관에 통보하는 검토의견서

〈 예 시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의견서

= 000시 00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안) =

#### ■ 종합의견

- 00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지형여건상 서해안 조위의 영향으로 한강 수위가 상승되면서 00천과 사업예정지내의 00천, 00천에 영향을 미쳐 -----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방향은 기본적으로 정확한 기초조사를 통하여 예정지구 입지에 대한 방재안정성 여부(기초조사)를 우선 -----
- 그러나, 본 협의요청서는 재해이력, 하천현황, 관련계획 등 기초조사가 개략적인 조사에 그쳤을 뿐 아니라, 재해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내용 또한 단편적인 분석에 그치고 있어 지구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는 매우 미흡하므로 본 검토서의 기초조사, 재해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에 대하여 -----  
-----  
① 전반적으로 재작성이 필요-----  
② 부분적 보완이 필요-----  
③ 본 협의요청서(안)대로 시행 철저-----

## ■ 세부 검토의견

- 000지구는 한강과 임진강의 합류지역에 접하고 있으며, 1998년 00 천 수위상승과 서해안 조위상승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으  
로서 과거 재해이력에 대한 -----  
-----  
-----
- 개발 전 대상지역의 배수체계를 분석하고 개발 중·후 배수체계  
에 대한 현황조사(배수유역도 첨부)를 상세하게 하여야 하며 특  
히, 연접한 00택지개발지구와 00 신도시지구와 연계하여  
-----  
-----  
-----
- 00천의 경우 개발단계에서 유로변경이 예상되나, 가능한 유로변경  
은 지향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개발계획시 유로  
변경에 대한 타당한 사유와 -----  
-----  
-----
- 본 사업예정지와 인접해 있는 배수펌프장(00, 00 1·2)의 시설능  
력이 개발 후 도시화가 되었을 때 문제가 -----  
-----  
-----

## ■ 기타 검토의견

- 사업지구 면적이 14만9천 m<sup>2</sup>로서 개발후 흥수량이 KS-1, KS-2에서 각각 0.61CMS, 0.1CMS 증가하여 영구저류지의 계획은 토지이용계획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침투시설의 정량적 저감효과-----
- 또한, CN값 산정시 토양도와 토양분류법의 채택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며, AMC 조건의 경우도 무조건 -----
- 본 계획서에서는 B-BL 공동주택지와 녹지 사이에 침투측구 580여 m를 설치한다고 했는 데 -----
- 본 사업지구와 같이 소규모 단지의 경우 대부분 도달시간이 30분 이내이고 임계지속기간도 6시간 이내-----
- 개발 후 토지의 절성토에 따라 축대의 설치가 필수적으로 판단되나, 축대붕괴를 방지-----

## 8

# 홈페이지 이용

## 1. 목 적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에 대하여 널리 홍보하고 관련 자료를 보다 편리하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개설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NEMA website. At the top, there is a Microsoft Internet Explorer toolbar with various icons like Back, Forward, Stop, Home, and Search. The address bar shows the URL <http://nema.go.kr/>. The main header features the NEMA logo and the slogan "우리 함께 만들어요, SAFE KOREA!". Below the header, there are several sections: "제난 뉴스 속보" (Emergency News Bulletin) with a video thumbnail; "오늘의 제난 종합상황" (Today's Comprehensive Disaster Status) with a list of news items; "NEMA 뉴스" (NEMA News) and "정책방송(KTV)" (Policy Broadcast) with a thumbnail of a press conference; "국회관련정보공개" (Information Disclosure related to the National Assembly); "유관사이트링크" (Links to Related Websites) with dropdown menus for "제난안전대책본부", "소방본부", "소속기관", and "관련정보시스템"; and a sidebar with links for "나의 민원열람", "질의응답", "민원위 일정안내", and "e-뉴스레터 가입". On the left side, there is a sidebar with links for "전체검색" (Full Text Search), "직원검색" (Employee Search), and a search input field with a "검색" (Search) button. Below this, there is a section titled " 함께 배워요 안전교육" (Learn Together Safety Education) with a link to "위험! 신고하세요" (Report Danger!). Further down, there are sections for "제난관리 혁신TM제안방", "클린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센터", "친절만족도고객센터", and "공무원부조리신고". At the bottom, there are banners for "설날 선물은 우리 동식품!", "국정브리핑", and "U-안심폰 등록신청". A red box highlights the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Pre-disaster Impact Assessment) link in the "유관사이트링크" section.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내 Site 구축 현황(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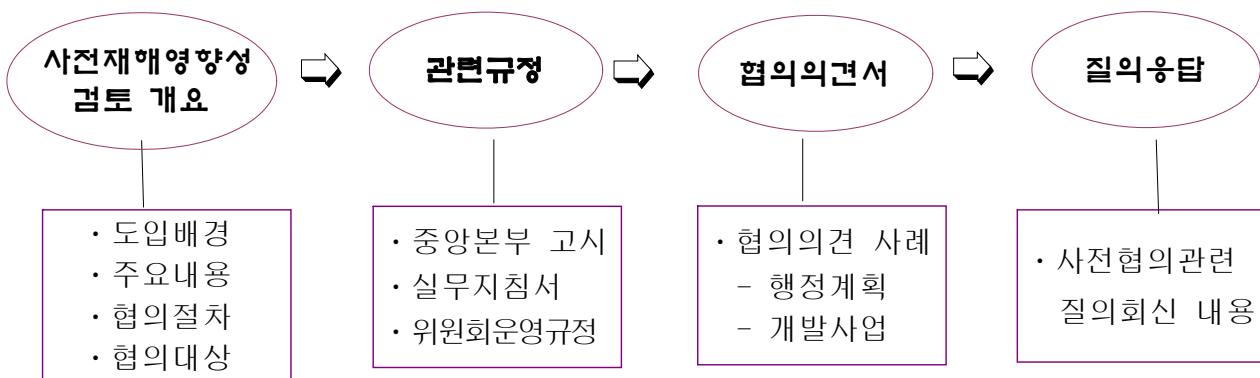
## 2. 주요내용

홈 > 기타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파일(F) 편집(E) 보기(V) 즐겨찾기(A) 도구(I) 도움말(H)  
◀ 뒤로 ▶ ❌ 🏠 검색 ⭐ 즐겨찾기 🚗 📱 📧 🖨 📁 🔎  
주소(D) http://nema.go.kr/information/effect/effect\_01.jsp

**소방방재청**  
국민안전/전자민원/정책참여/알림정보/정보공개마당/우리청소개  
함께 웃는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하는 소방방재청

**기타**  
▶ 홈페이지이용안내  
▶ 민방위교육일정안내  
▶ e-뉴스레터가입  
▶ 모바일서비스안내  
▶ 사이트맵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민방위국민퀴즈  
▶ 국회관련정보공개  
▶ FTA란?  
● 도입배경  
○ 최근 지구 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인한 계릴라성 집중호우, 대규모 태풍 등으로 자연재난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고 ('02년 태풍 루사, '03년 태풍 매미 등에 11조원의 막대한 피해 발생)  
○ 특히 피해원인 중 도로건설, 도시개발 등 토지이용계획수립 및 개발사업 시행단계에서 사전에 충분한 재해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피해를 가중  
※ 시도·시군구에서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의 인허가시 농지, 산림, 상하수도, 주택부서 등에서 제시된 의견은 농지법, 산림법 등 관련 개별법규에 따라 법적 의무로서 이행토록 되어 있으나 방재부서의 견토 의견은 법적 규정 미비로 의견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30만m<sup>2</sup> 이상 택지개발사업 등 24개 특정 개발사업의 경우는 재해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 도시계획, 택지개발계획, 수자원매립계획 등 주요 토지이용계획단계에서 재해영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없고  
- 30만m<sup>2</sup> 미만의 24개 개발사업과 재해영향평가 대상에서 당초부터 제외되어 왔던 도로, 철도 등 기타 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재해영향의 사전검토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었음  
※ 상습침수, 해일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파주·문산·금촌지구, 삼척·남양지구, 마산·여수·매립지 등도 개발 단계에서 방재부서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해가 반복되는 결과 초래  
▣ [주요내용] ▣ [협의절차] ▣ [협의대상]  
관련규정 협의의견서 질의응답  
문의 담당부서 : 평가관리팀 담당자 : 배상원 TEL : 02) 2100-5472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내 Site 구축 현황(Ⅱ)》



## II. '07년 제도개선 계획



## II. '07년 제도개선 계획

### 1 협의대상 세부기준 마련

#### 1. 필요성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에 협의대상을 95개(행정계획 48, 개발사업 47)를 선정하면서 대상사업별 세부기준 등이 미비함.
- 특히, 95개 대상사업 중 일부 사업은 재해영향과 관련하여 경미한 대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협의대상범위에 포함되어 있거나, 행정계획이면서도 중복하여 협의를 한다든가, 재해영향이 없는 변경 승인 등의 경우에도 협의를 거치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대상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사업 여부에 대한 혼선과 업무처리에 따른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검토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중복 협의되는 대상사업의 제외
- 개별법령에서 의제되는 경우 협의 제외
- 부지조성이 완료된 지구 내에서의 협의 제외
- 변경 대상일 경우 부지면적을 대상으로 조정 등

## 2 검토협의분야 대가기준(방재품셈) 고시

### 1. 품셈 제정 목적

- 검토협의분야 대가기준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가지고 있는 재해요인 등 각종 조사를 통해 파악·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출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서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적정하게 하기 위함임. 또한, 중앙·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서 검토서 작성을 위한 효율적 예산 운용 등을 하는데 있음.
- 개정 법률(안)에 방재업무 대행비용을 산정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은 다음과 같음.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 발췌]

자연재해대책법(법률 제8170호 2007.1.3)

현 행	개 정
	제38조의2(방재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소방방재청장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 산정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2. 제정 내용

- 사전재해검토협의 분야 표준품셈(안)의 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표준 품셈(안)의 산출기준 및 산정방법 제시
  - 단위업무별 소요인력 산출근거 및 기준 마련
  - 단위업무별 일위대가 결정
- ※ 소방방재청에서는 현재 표준품셈 작성을 완료하고 관계 전문가 검토 등 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체적 제정 내용은 금년 상반기에 제정·고시할 계획임.

### 3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사전재해 분야) 제도

#### 1. 대행자 제도 개요

- 검토협의요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일정한 자격 기준이 없어 해당 개발계획에 대한 충실한 재해영향성 검토가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개정 법령 규정에 의거 검토서 작성 업무를 수행 할 대행자는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 인력을 확보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등록을 이행한 후 대행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는 대행자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음.

[대행자 등록기준 일부 발췌]

현 행	개 정
<p>제38조(비상대처계획 수립의 대행 등) ①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자로 하여금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수립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자"라 한다)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요건·절차 등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자로 등록하여야 한다.</p>	<p>제38조(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의 대행)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따른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기초조사, 분석,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li><li>-----</li></ol> <p>②대행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 2. 추진 계획

- 앞으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이 완료되면 대행자 등록 요건 및 등록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며, 하반기부터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등록업무를 시행할 계획임.

## 4 방재분야 특수전문 교육과정(사전재해 분야)

### 1. 필요성

- 일선 용역기관에 종사하는 기술인의 경험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검토협의요청서를 내실 있게 작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방재분야 전문 인력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특수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방재분야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

### 2.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 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규정
- 소방방재청 훈령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 3. 교육과정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분야 특수전문교육은 기본과정, 입문과정, 전문과정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심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안)은 다음과 같음.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분야 교육과목 편성(안)]

과정별	교육과목
기본과정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관련법규(법령, 지침)
입문과정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제도 이해
전문과정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실무)	- 지역계획 수립의 방재개념 - 단지개발에 따른 재해영향 분석 - 입지요형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 교통시설 등 시설별 재해영향분석 - 특정시설의 재해영향 분석 - 하천정비 및 댐 건설 기본계획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 수공학적 재해영향 분석 - 지반공학적 재해영향성 검토기법

\* 교육과정 이수 후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를 대상으로 소방방재청장이 시행하는 인증시험을 실시하고, 인증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

## 5 사전재해협의분야 업무지원시스템 구축

### 1. 필요성

#### 가. 사전재해협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요구

- 협의요청서 접수에서부터 검토결과 통보 및 협의결과 이행관리에 이르는 업무절차의 정보화 필요
- 예방재난관리 확산기반 마련을 위한 검토협의 관련자료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자료 DB구축 필요

#### 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활성화에 기여

- 검토협의 절차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기간을 단축시키고 신속하게 검토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제도 활성화에 기여
-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DB화함으로써 효율적인 방재자료 구축

### 2. 주요기능

#### 가. 검토협의제도 업무지원체계 구축

##### □ 검토협의 분류체계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분야별 세부 분류체계 관리
  - 48개 행정계획(34개 관계법령), 47개 개발사업(40개 관계법령)
- 검토협의 분야별 관련법령 조회 및 관리
  - 검토협의 대상/분야별 관련법령 조회기능 제공

## □ 검토협의 절차운영

- 검토협의 요청기능 구현
  - 관련 행정기관이 검토협의 요청을 온라인으로 수행
- 외부/내부 검토협의 절차 운영기능
  - 내부검토 수행 후 의견서 등록기능(방재연구소)
  - 외부검토 수행 후 의견서 등록기능
  - 검토협의 분야별 외부 검토위원 관리 및 배분 기능
- 검토협의 진행상태 관리
  - 검토협의 진행상태의 모니터링 기능 제공
- 검토협의 결과관리
  -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협의 의견서 조치계획 및 결과내역 관리

## □ 관련자료 등록 및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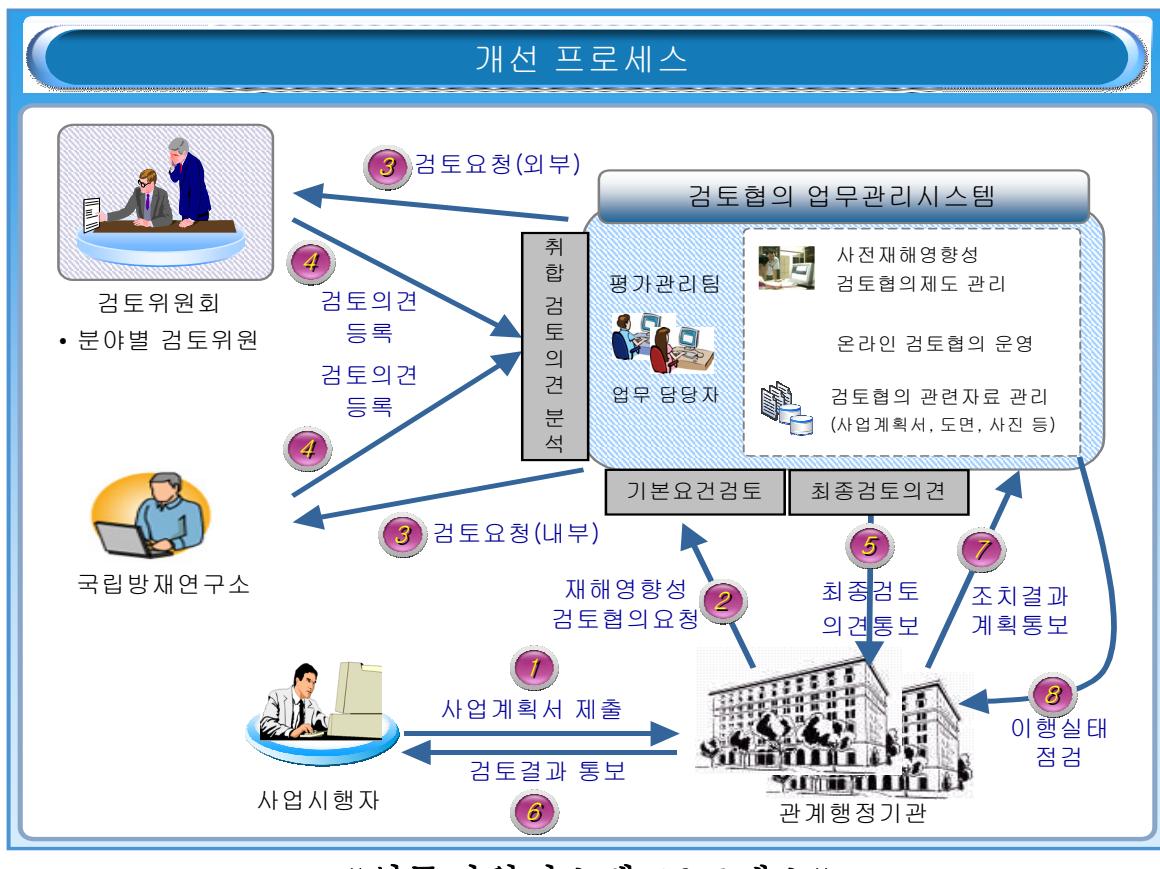
- 검토협의 운영절차별 관련자료 등록 및 관리기능
  - 협의 관련 문서, 사진 및 도면, 기타 전자파일(CAD 파일 등)
- 검토협의 관련자료 다운로드 활용 시
  - 자료 접근기록에 대한 이력정보 자동 기록

## 나. 검토협의 관련자료 검색 및 조회

- 검토협의 관련자료 통합 검색기능 제공
  - 키워드 검색, 상세 검색, 디렉토리 검색 등 다양 검색조건 제공
  - 분류체계별/진행단계별 자료 등록 시 검색 키워드 입력기능
  - 자료검색 시 자료별 검색제한을 위한 권한관리기능 제공
  - NDMS 정보 연계 조회

## 다. 관련자료 DB 구축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중앙단위) 자료 구축
  - 기 시행된(2005.08.17~현재) 검토협의 관련자료 구축
  - 검토협의 자료별 검색용 키워드 DB 구축



## 3. 기대 효과

- 방재청에서는 장기적으로 중앙과 지방이 공유할 수 있는 사전 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 동 시스템은 개별 사업지구별로 체계적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시스템으로 운영관리하게 될 것이며,
- 중앙과 지방간의 방재 네트워크 구축으로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한 재해예방사업의 기틀을 마련

## 6 재해경감대책협의회(사전재해협의분야) 운영 활성화

### 1. 개요

- 재해발생시마다 제도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운영 계획 【자연재해대책법 제10조】
- 수해발생 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분야에 대한 가동여부를 판단, 필요 시 회원으로 등록된 단체를 수시 가동·운영

### 2. 운영 목적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분야별 피해발생 원인분석
-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시설별·유형별 특성에 맞는 중점 검토항목 보완 개발

### 3. 사례소개

(피해유형별 원인분석 및 시사점)

소하천 월류에 의한 도로 유실 (인제군 필례마을, 기린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피해현황 : · 소하천 월류에 의한 도로 유실</li><li>• 피해원인 : · 과도한 홍수량 및 홍수위, 홍수위보다 낮았던 도로 유실</li><li>• 종합의견 : · 소하천과 본류하천이 만나는 지점의 도로 배수구조물의 통수능 부족에 의한 도로 및 배수구조물 유실. · 기본계획 수립에 의한 계획홍수위 고시를 통한 적절한 위치에 도로 설치, 하천과 본류하천이 만나는 지점의 배수구조물의 충분한 단면 유지 등의 대책 필요</li><li>• 시사점 : · 도로노선 선정 및 개발방법 개선</li></ul>	



### III. 행정사항



### III. 행정사항

#### 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운영 철저

- 제도 이행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표본 조사를 실시 예정이며, 부진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재난관리평가 및 정부합동감사 시 불이익이 없도록 운영 철저

#### ② 협의의견 이행실태 관리·감독 철저

- 조치결과 제출 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분석을 통한 지역본부장의 의견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
- 현지 사업장 점검 등을 통한 이행실태 여부 확인 조사  
⇒ 이행실태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하여 공사중지 요청 등 이행 조치

#### ③ 지방검토위원회의 조속한 구성 및 효율적 운영

- 조례제정 및 지방검토위원회의 구성 마무리(미 구성 시·군·구)
- 기관별로 검토위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업무전문성을 제고

#### ④ 개발관련 기관(부서) 사전재해영향성협의 이행 철저

-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개발관련부서에 동 협의제도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개발관련 허가·승인 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  
※ 자연재해대책법 제7조 : 협의절차 완료되기 전 사전허가 등의 금지 조항 준수

#### ⑤ 실무 워크숍 결과 전달 교육 실시

- 일정 : 워크숍 후 1개월 이내
- 대상 : 시·도 및 시·군·구 별, 개발관련 부서 실무공무원
- 교육내용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전반
- 행정사항 : 전달교육 시행결과를 제출('07. 3월중)

#### ⑥ 사전재해분야 재해경감대책협의회 현지조사 협조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관련 자료 등 기타 행정지원 제공 등 협조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질의 응답사례**

## 질의응답 사례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일(2005. 8. 17) 전·후 신청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여부

### ▣ 질의

- 본 사업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서)를 2005년 6월에 입안권자인 시에 제출하였으며, 2005년 9월에 도지사(결정권자)에 접수하였을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답변】

- ☞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일('05. 8. 17) 이후인 '05년 9월에 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신청한 경우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함

### ▣ 질의

-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을 주거지역내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면적 : 52만m<sup>2</sup>) 변경하기 위하여 입안계획서를 작성하여 '01. 3. 29 (1차), '02. 8. 26(2차), '02. 12. 4(3차), '03. 10. 23(4차), '04. 12. 17(5차), '05. 7. 19(6차) 공람을 실시하여 결정권자인 ○○도에 2005. 10. 10 결정신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관리계획의 결정)한 경우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이 되는지 여부(입안자 : ○○시장)

### 【답변】

- ☞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일('05. 8. 17) 이후에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신청을 ○○에 제출한 경우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함.

### ▣ 질의

- 본 사업은 주민제안에 의한 사업으로 2005. 6. 8일에 주민제안서를 접수했고, 2005. 8. 19일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을 했는데, 관계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기준을 주민제안 접수날짜와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일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 【답변】

- ☞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권자인 시·도지사에게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함.

## ▣ 질의

-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부칙 “제3항은 ....제6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최초로 수립되는 행정계획과 최초로.....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행정계획은 2005. 8. 17일 이전에 수립되어 있고, 개발사업을 ‘05. 8. 17일 이후에 인가신청 한다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아야 하는지여부?  
※ 1972. 12. 30일 도시계획시설(유원지)결정, 1984. 11. 02일 조성계획 결정, 2005. 04. 13일 조성계획변경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

## 【답변】

- ☞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일(‘05. 8. 17)이후에 신청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함

## ▣ 질의

- 대상지는 2004년도 11월에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이나 일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여, 변경내용에 대한 결정권한은 ○○도지사로부터 ○○시로 위임된 내용으로 입안권자와 결정권자가 모두 시장·군수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할 때 관련부서 협의과정에 있어 아래와 같이 진행 중일 경우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이 되는지 여부  
※ 추진과정
  - 2005. 8. 11 관련부서 협의 실시 (자연재해대책법 미 시행)
  - 2005. 8. 17 자연재해대책법시행일, · 2005. 9. 28 주민의견 청취

## 【답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와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동일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부칙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확정일(관련부서 협의)을 기준으로 하며, 귀하의 경우 2005. 8. 11일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경우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 ▣ 질의

- ○○도에서 시행하는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L=6.28\text{km}$ )를 ‘04년 5월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현장 여건을 반영하고자 시공사의 요청에 의하여 일부구간 ( $L=1.6\text{km}$ 정도)의 도로선형 변경 및 교량설치를 위한 설계변경을 진행 중에 있음. 이러한 경우에도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이 되는지 여부

- 참고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은 2005.8.17 개정되었으며, 본 사업은 법령 개정 전 이미 착수된 사업이며, 본 설계변경(안)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거 지방 건설기술심의회의 심의를 이행

## 【답 변】

-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일('05. 8. 17) 이전인 '04년 5월 지방도 확·포장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 ■ 질 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05. 8. 17일 이전 결정신청 완료, 2005년 8월 11일 - 24일 주민공람 진행 중 의견이 발생하여 도로의 일부구간 변경되어 '05. 10. 7 ~ 10. 20일 주민 재공람을 실시한 상황임. 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에 『③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 행정 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행정계획과 최초로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림. 본 사업은 최초 결정신청일이 8월 17일 이전이며, 이후 행정절차 이행 중 재협의에 따른 주민 재공람을 했을 경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대상인지 여부?

## 【답 변】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일('05. 8. 17)이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부칙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 질 의

- 당 사업장(박물관)은 '94년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에 의거하여 “공공시설입지 지정승인”을 득하여 운영하여 왔고, 2002년 동법에 의거 “공공시설입지지정변경 승인”을 득하여 현재까지 토목공사를 실시하던 중 건축계획의 변경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자할 때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부칙 ③(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행정계획과 최초로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로 규정한 바, 당 사업장은 94년부터 인·허가를 득하여 온 것으로 인정받아 사전재해영향검토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지?

## 【답 변】

-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부칙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의 적용 시기는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일('05. 8. 17)을 기준으로 하며, '05년 8월 17일 이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한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함

## ■ 질 의

-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를 2005년 7월에 입안권자인 시장에게 제출하였다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사업이 되는지 여부
- 만약, 입안제안서가 아니고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입안(안)을 확정한 날(최종 결재권자자가 입안을 위한 서명 날인이 있는 날)이 2005년 8월 17일 이전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닌지

## 【답 변】

-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부칙 제3호의 규정 적용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결정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와 결정권자가 동일한 경우 입안 확정일(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위하여 관련 실·과 및 관계 행정기기관의 장과 협의 시행일)이 '05. 8. 17이전인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 질 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이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04. 6. 입안제안 하여 관할시청에서 제안내용의 타당성을 인정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관련부서 협의 및 환경성 검토를 위하여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장)와의 협의 등을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 2005. 8. 24 신청하였다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에 여부?

## 【답 변】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일('05. 8. 17)이후에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임

## ■ 질의

- 본 사업대상지의 경우 2004년 7월 26일 민간제안을 통해 ○○시에 제1종지구 단위계획(안)을 접수하였으며 2005년 8월 25일 ○○시에서 ○○도에 입안 신청을 한 상태이므로 위와 같은 일정에 따라 본 사업(민간사업)의 경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여부?
- 현재 법령상으로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은 제외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비계획수립시 용도지역 변경 등의 도시관리계획 사항이 수반되어 있을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답변】

- ☞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일('05. 8. 17)이후인 2005. 8. 25 ○○시에서 ○○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신청을 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 해당되며,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경우 같은 법 제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는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이 아님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동법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 질의

- 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 등 개발행위에 대한 관련 인·허가 서류가 이미 접수되어 있는 사업도 협의시기 이전이라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여부

### 【답변】

-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사업 적용 시기는 개정 자연재해대책법시행일('05. 8. 17)을 기준으로 하며, 대상사업 승인권자에게 인·허가 등을 신청한 날이 '05. 8. 17이전인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부칙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서 제외됨

## ▣ 질의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부칙 제3항 규정에는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행정계획과 최초로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1993년 3월 20일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폭6m, 연장 20m)를 규모를 축소(연장20m→19m)하기위해 2005년 12월 현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 신청코자 한다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인지 여부?

### 【답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하여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일('05.8.17)이후인 '05년 12월 결정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서 제외됨.

## ▣ 질의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에 포함되지만 개정법령 시행 전 승인신청을 하여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향후 이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 사업개요

- 2005년 6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
- 2005년 9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 승인권자 : 시장·군수

### 【답변】

-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이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일(2005. 8. 17)이후에 신청된 경우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함

## ▣ 질의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허가·인가 등이 되는 사업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의 사업장은 지난 최초 '92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95년 준공되어 사업장을 운영하여 오던 사항이고, 그 최초 인가가 '92년에 받아 금번에 변경인가를 받는 사항임에도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답 변】

- ☞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일('05. 8. 17)이후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는 재해영향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 ■ 질 의

- 본 사업은 1993. 3. 22 : 00도요지 보수정비사업 지침시달(문화재관리국)에 따라 그간 문화재보호구역내 사유지 매입 등 거쳐 1997년 사적지에 대한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를 거쳐 2003. 10. 22 문화재청으로부터 전시관 등 시설물건립사업 지침을 승인받아 2004년 기본설계 및 2005년 실시설계를 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음. 2005. 7. 1일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신청하였고, 결정 고시 등을 거쳐 실시 계획인가 신청하였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3항 대상적용례의 규정에서 "제6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행정계획과 최초로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규정에 이전에 행정계획(문화재청 사업지침시달 등) 수립과 도시관리결정 고시를 위한 결정 신청을 2005. 7. 1하였는데 자연재해 대책법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여부

## 【답 변】

- ☞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일('05. 8. 17) 이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신청을 한 경우는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니며 입안권자와 결정권자가 동일한 경우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일('05. 8. 17) 이전에 관계 실·과 협의를 거쳤다면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 ■ 질 의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3항의 '영 시행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행정계획과 최초로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법시행이전인 1990년도에 최초 승인되어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신청한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면적 1,244,010m<sup>2</sup>(18홀 골프장), - 관련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 사업계획 변경사항 :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용도별 면적증감, 전체면적은 동일)

## 【답 변】

- ☞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일('05. 8. 17)이후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한 경우는 재해영향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 ▣ 질의

-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나 시행령에 따르면 2005. 8. 17이후의 최초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적용하고 있음. 자연재해대책법이 시행된 2005. 8. 17 이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금년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예정인 경우 (따라서 최초 행정계획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재해영향평가 대상으로서 실시계획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에도 제외되는 것으로 사료됨 협의대상이 되는지 여부?

## 【답변】

- ☞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일('05. 8. 17)이후에 신청되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임

## ▣ 질의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1999년) 후 기반시설 조성공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지구(면적 : 90만m<sup>2</sup>)입니다. 동 지구는 사업시행 당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 범위에서 제외된 지구임.
- 현재 균린공원 조성(기반시설 조성공사에 포함)을 위하여 개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결정승인 신청 중에 있으나,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균린공원만 별도로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변】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인 2005. 8. 17 이후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 포함)하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거쳐야 함.

## ▣ 질의

-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 취락지구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 그간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현행법상에 맞게 개발계획 내용을 재정비하는 행정계획으로써 2005년 3월(○○시에서 용역발주)부터 현재까지 행정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부칙 제3항에 의하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2005년 8월 17일 이후 수립되는 행정계획에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 【답 변】

-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대상 행정계획에 대한 근거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일('05. 8. 17)이후에 행정계획의 수립· 확정을 위하여 관련법에 의해 신청하는 경우에는『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임

## ■ 질 의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이전에 구 도시계획법에 의거 '96년 9월 상세구역결정, '00년 6월 상세계획결정(최초행정계획) 및 '04년 11월 실시계획인가(최초개발사업)를 득하여 현재 공사 중이며 상세구역 내 일부도로는 도로체증을 해소하고자 개통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행중 상세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상세계획(현 지구단위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3항 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답 변】

-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부칙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의 적용 시기는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일('05. 8. 17)을 기준으로 하며,
- ☞ 2005년 8월 17일 이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 관리계획(변경 포함)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고 있음 다만, 같은 법 제30조 제5항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됨.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여부 질의에 관한 사항

### 1.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분야

#### ■ 질의

- 도시공원의 경우 2005. 10. 1일자로 공원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도시공원(1,500평방미터의 어린이공원)이 다 해당되는지 여부?
- 공원조성계획(실시계획인가), 유원지 조성계획 등 조성계획(실시계획인가) 결정은 시·군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도 시군 위임사항인지? (도 협의 필요 없는지)

#### 【답변】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 해당되며
-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계획의 수립·확정 또는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권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시·도지사 또는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협의 하여야 함.

#### ■ 질의

- ○○대학교는 ○○캠퍼스 조성사업(부지면적 약 87,000m<sup>2</sup>)을 위하여 사업계획에 대하여 2005년 8월 9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일부이전(변경)계획 승인을 득하였음. 도시계획시설(학교)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및 조성계획승인 절차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진행하여야 하는 일정임. 본 사업의 경우 앞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이전에 각각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학교이전계획승인을 받았으므로 학교설립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 【답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동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은 실시계획 인가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 의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의 경우 행정계획과 개발계획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도시관리 계획(학교시설)을 행정계획 단계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받았는데 또 개발사업단계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는 행정계획단계와 개발사업단계에서 각각 협의를 거쳐야 함. 다만,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는 별도의 절차를 이행하는 제도가 아니라 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행위(행정계획, 개발사업) 시에 재해영향에 관한 검토사항을 포함하여 협의하는 제도임.

## 질 의

- 도시개발사업부지 면적 500,000m<sup>2</sup>로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장입니다.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하면 개발사업 적용대상에는 제외되나, 행정계획상 지구지정 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이를 적용하는지?
- 또한 개발사업 항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전체 도시계획사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구역의 사업(가령 도시계획도로 일부개설 등)을 사업시행시 개별적으로 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 ☞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은 지구 지정 전(개발계획 수립 전 : 자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아야 하며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은 실시계획 인가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함.

## 질 의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의 범위 및 협의시기에 의하면 『도시개발법』 제4조에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은 지정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정전이란 협의시기를 언제를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이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하고 먼저 구역지정을 할 경우 협의시기를 언제 하여야 하는지?

## 【답 변】

- ☞ 『도시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은 개발구역 지정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협의를 거쳐야 하며 『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한 지역(자연녹지 및 도시지역 외 지역)에 대하여는 개발계획 수립 시에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협의를 거쳐야 함

## ■ 질 의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및 대상이라면 협의 시기는?

## 【답 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시에 협의하여야 함.  
※ 제1종 지구단위특별계획 수립지침 제15절 : 특별계획구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 ■ 질 의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중 도시관리계획에 해당되는 사항 중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 도시관리계획(변경포함)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여부?
- 기존에 산업촉진지구로 지정받은 부지를 개발계획이 변경되어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돈사부지->산란계)에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의 가.항(4)호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여부?

## 【답 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변경 포함)의 경우는 제3항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시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하며,
- ☞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시에는 재해영향에 관한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질 의

-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과 협의시기에 대하여 질의?

### 【답 변】

- ☞ 도시관리계획은 행정계획으로서 계획수립단계에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검토·협의하는 것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전(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하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 계획은 개발사업으로서 사업시행단계인 실시계획단계에서 재해영향에 대한 저감 대책 수립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협의하는 것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함

## 질 의

- 하수도시설의 증설로 단위시설이 확장될 경우 관리계획수립전의 협의 대상 인지 여부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단독주택용지의 지정용도를 주차장 용도로 변경 결정할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인지 여부

### 【답 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변경)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 해당됨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서 제외됨

## 질 의

- 당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하수도시설설치사업을 진행 중이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실시계획승인고시(2005. 8.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의제 처리되지 않는 관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한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여부

### 【답 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 계획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함

## ▣ 질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5항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여 대학시설을 증축코자 하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5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대상인지의 여부?
- 경미한 사항의 사유로 관리계획변경을 받은 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을 받을 경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대상인지 여부

## 【답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 행정계획 단계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 계획 변경은 개발사업으로서 실시계획단계에서 재해영향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협의하는 것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하나 동법 제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 질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주거지역내에 단독주택 허가 시에도 지목변경이 수반되거나, 50cm이상 절·성토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민이 영농의 편익을 위해 전답을 개량하거나, 농로 개설 시에도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답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받는 사업만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 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면 됨

## ■ 질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여부?
- 타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 허가를 협의(의제 처리)할 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여부

## 【답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전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거쳐야 하며,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개발행위 허가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에서 제외됨
- 타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 허가를 의제처리 되는 경우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 ■ 질의

- ○○시에서 진행 중인 주민제안 도시관리계획변경(제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이 2005년 5월 30일 ○○시에 접수되어 행정절차 이행 후 결정권자인 ○○도에 '05년 12월 28일 접수되었으나, ○○도 사무처리위임조례 변경에 따라 승인권자 변경(00도 ⇒ 00시로 이관)이 예정됨에 따라 2005년 12월 28일 ○○도에 접수된 서류가 2006년 1월 14일 00시로 회송되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시장 승인을 득하려는 사항으로서 상기와 같이 결정권자가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시 접수시점이 '05년 5월 30일인 경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여부?

## 【답변】

- ☞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일(2005. 8. 17) 이후에 시장·군수가 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 도시 관리계획결정 신청을 한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거쳐야 함
- ☞ 다만 ○○시의 경우 도 사무위임조례 변경에 따라 결정권자가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변경되었다면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자연재난담당부서)의 장과 재해영향에 관한 사항을 사전 협의 하여야 함.

## 질의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이나, 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를 당초 결정된 면적에서 일부를 제척하는 안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진행할 경우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또한, 동일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해야 하는지 여부

### 【답변】

- 당초 결정된 개발대상 면적보다 축소되는 관리계획변경의 경우 당해시설에 대하여는 대상면적 축소로 인하여 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될 수는 있겠으나, 도시관리계획 측면의 재해영향성검토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거쳐야 하며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 행정계획은 계획수립단계에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검토·협의하는 것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도시기본계획 및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하며 개발사업은 사업시행단계인 실시계획 단계에서 재해영향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협의하는 것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함.

## 질의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별표1]의 내용 중 협의시기를 보면 행정계획 중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경우 실시계획 인가 전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언제 하여야 하는지?

### 【답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은 실시계획 인가 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 질 의

- 00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의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시기는
- 행정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협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의미가 관리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모든 계획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5년마다 재정비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시에만 하면 된다는 것인지?
-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하여 재해영향 평가를 받는 대상사업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은 실시계획 승인 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음 그렇다면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때는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답 변】

- ☞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사전 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하며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변경 등 포함)의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거쳐야 함.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서 제외됨.
- ☞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이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지방: 15만m<sup>2</sup> 이상 ~ 30만m<sup>2</sup> 미만, 중앙 : 30만m<sup>2</sup>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별표 1 “개발 사업의 경우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하여 재해영향평가를 받는 대상사업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 질 의

● 2004년부터 농림부 주관으로 한국농촌공사에서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질법”) 제38조」와 「농어촌 정비법 제29조 내지 제42조」에 의거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시행중에 있음. 본 사업은 농어촌지역의 경관정비, 소득증대사업 등을 주 테마로 2~3개 법 정리를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여 국지적이고 소규모인 10여개 사업을 70억 상당의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기본계획 수립 후 “농어촌정비법 제32조”에 해당하는 마을정비구역 지정은 하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사전환경성검토의 경우 행정계획에 의한 협의과정은 없으며, 시행계획 수립 시 각 사업별로 규모에 따라 개발사업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하여 각 지방환경청의 협의를 받고 있습니만,

1.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경우는 “자연대책법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1]”에 제시된 「농어촌정비법 제31조의2와 제34조」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개발계획 수립시 및 동 사업 시행계획 수립시 각각에 대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행정계획에 의한 협의 없이 시행계획 수립시 개발사업에 의한 협의만을 받아도 되는지 여부?
2.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아야 한다면 사업의 규모(면적, 길이 등)와는 상관 없는지요? 또, 단순한 사업(예를 들어, 돌담을 정비하고 경관개선을 위한 꽃 길을 조성하는 등 자연재해 등을 유발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도 농어촌정비 법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 ☞ 『농어촌정비법』 제31조의2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개발계획은 행정계획단계로서 개발계획 수립시에 자연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 계획은 개발사업단계로서 시행계획 승인 전에 자연재해저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하고 있음.
- ☞ 참고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는 별도의 절차를 이행하는 제도가 아니라 계획수립 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계획(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시에 재해영향에 관한 검토사항을 포함하여 협의하는 제도임
- ☞ 『농어촌정비법』 제31조의2, 같은 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사업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의 사전재해영향성검협의 대상규모(면적, 길이 등)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규정에 따르며,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 질의

-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을 농어촌정비법 제31조의2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 개발계획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별도 수립하지 않고 도지사로부터 사업대상지 선정 및 확정 통보 후 사업을 시행할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도지사에게 협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하여야 하는지?

### 【답변】

- ☞ 도지사로부터 사업대상지 선정 및 확정 통보된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정주생활권개발사업) 시행 전 재해영향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과 사전협의 하여야함.

## 질의

- 저희가 설계한 노선은 도시계획도로 중로( $B=20.0m$ ) 실시설계로서, 과업내용은 하천 횡단 교량 2개소, 기존 도로확장 1Km( $B=12.0m \rightarrow B=20.0m$ )인데, 사전 재해 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여부?

### 【답변】

- ☞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될 시에는 행정계획 단계에서 재해영향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고 있으며, 개발사업단계에서는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시에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 질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으로 법으로 규정되어있음 도시계획 시설(학교)로서 세부시설변경결정을 받을 시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지 않았음. 부지면적 증감이 없으며 건축물 위치변경만 있을 뿐인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여부?

### 【답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 계획 변경 인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 ▣ 질 의

- 현재 도시계획시설 도로공사 막바지 시점입니다.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다보니 약간의 면적( $11m^2$ )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는 2004년에 받은 상태이며, 이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경미한 사항에 보면 기존 도로의 면적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의 개량인 경우라고 나오는데 면적이라 함에 규정이 없어  $1m^2$ 의 변경도 경미하지 않다는 말이 되는 건가요? 거의 99% 준공시점에서 사전재해를 받으라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됨.

### 【답 변】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는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등의(변경)인가 전에 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사전에 검토협의하는 제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됨
- ☞ 또한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도로면적  $11.0m^2$ 의 증가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 질 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관련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으로 관리계획변경이기는 하나 면적이 축소가 되는데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해야 하는지

### 【답 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사항 중 제5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함

## ▣ 질 의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지역 내에서 입원실 증축을 하는 경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여부? 본 사업의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 입원실(규모 : 지상 1~2층/건축면적  $207m^2$ (63평), 연면적  $402m^2$ (121평))을 증축코자 함. 이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 여부?

-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부지 내에서 소규모의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도시계획 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건축물 건립시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 【답 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같은 법 제30조 제5항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거나, 부지면적의 변경이 없고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 ▣ 질 의

- 학교부지면적 증감 없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학교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세부시설 변경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세부 시설변경 결정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대상이 된다면 이유는?
  - 1998. 1. 15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 2003. 6. 17 도시계획시설(학교 : 세부시설) 결정

## 【답 변】

-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거나, 부지면적의 변경이 없고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세부시설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 ▣ 질 의

- ○○시에서 항만과 연접한 지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당 사업지는 ○○도시기본계획 상 매립지로서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하였으며, 이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가 1차 실시되어 제출된 바 있습니다. 당 사업과 연계 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게 되며, 본 업체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함께 용도지역 변경을 동시에 진행 중에 있으며, 다음과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 (1) 도시기본계획 변경 시에 들어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가 동일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에 다시 들어가야 하는지?
- (2) 아니면, 동일 사업의 연장이므로, 도시기본계획 변경 시에 제출하였던 사전 재해영향성검토협의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 【답 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변경)은 변경대상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 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것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공간적·장기적 계획수립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지침에 관하여 검토함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변경)은 개발·정비·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 등에 관한 계획으로서 기본계획수립시 제시된 재해영향성에 대한 예방계획을 검토 협의함
- ☞ 참고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시에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협의하는 제도임.

## ■ 질 의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개발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개발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득할 경우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전 협의를 완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발행위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 위에서 질의한 사업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지 내에 속해 있는 일부분으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전에 우선시행하여 추진하고자 함. 자연재해대책법 제7조에서 협의절차 완료 전 개발 사업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고 있는 바, 위의 사업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 일부분에 개발행위허가 및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대상이 아닌 사업을 우선 추진할 때에도 전체 사업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후 우선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지?
-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에서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개발사업이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을 의미하는지 여부?

## 【답 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대상이 아닌 경우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시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친 후에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됨
- ☞ 『자연재해대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사전허가 등의 금지”에 개발사업의 의미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을 말함.

## ■ 질 의

- 사업은 ○○도 지역 골프장 조성사업이며, 본 사업은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2004년 10월 국토이용계획변경요청서를 해당 "군"에 제출한 상태이나, 입지 등의 문제로 금회,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종전의 상태를 유지한 국토이용 관리법으로 사업을 재추진하게 되었음. 이렇듯 종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사업을 재추진 할 경우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본 사업은 해당 "군"에서 국토이용계획입안을 위한 공고절차는 거쳤으나, ○○도에 입안되지는 않았음.

## 【답 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함
- ☞ 참고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일(‘05. 8. 17)이전인 ‘04년 10월에 『국토이용관리 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하여 현재까지 절차 진행중인 경우는 자연 재해대책법시행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 ■ 질 의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과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진흥 개발계획 수립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에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목 개발 면적,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해당 되는지와 그 기준이 있다면 기준은 무엇인지?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와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폐광지역 진흥지구가 동시에 지정되어 있고 행정계획인 개발계획이 '97년도에 기 수립되어 있으며 지목은 대지이고, 개발면적이 13,835m<sup>2</sup>(4,185평)이며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인 부지에 연면적 24,723m<sup>2</sup>(7,479평) 규모의 건축물 축조 시에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받아야하는지?

### 【답변】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7조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및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실시계획과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진흥 개발계획은 지목, 개발면적, 용도 지역에 관계없이 계획수립 전(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및 실시계획 승인 전(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를 이행하고 있음.
- 사업대상지가 각종 개별법에 의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판단되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함

## ■ 질의

-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사업개요

- 사업면적 : 540m<sup>2</sup>, 폭 : 8.0m, 길이 : 65.0m, 사업시행자 : 개인

- 위 대상지는 평탄지인데, 협의대상 제외인 경우 시행규칙 제1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에도 해당되지 않고, 실제 현장답사를 해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아야 함 예를 들어 위의 경우보다 경미한 폭 : 6m, 길이 : 30.0m의 도로개설에서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얘긴데 그것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검토위원들에게나 서로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명확한 기준을 세워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답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포함)은 인가 시에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이행하고 있음. 다만, 규모가 작은 도시계획도로의 경우는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입지유형, 인접지역 및 당해시설 여건 등에 따라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설규모에 의한 협의 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음.

## ▣ 질 의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상에 유통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조정가능 지역으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법에 의해 재해영향평가를 받는 대상 사업에 해당되나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선행해야 하는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되는지

### 【답 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 포함)되는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임

## ▣ 질 의

- 같은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코자 용역을 시행중임. 협의대상 행정계획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되어있음.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 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되어있음. 궁금한 것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후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하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시와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모두 협의대상인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 결정시에만 하면 되는지?

### 【답 변】

-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고 있음
-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행정계획단계로서 동일한 지역일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중복해서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면 재해영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 질 의

- 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여 협의 중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 건축물이므로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에서 학교시설에 대한 항목은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설치공사”란 항목이 있으며 초·중등학교는 고등교육법이 아닌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바 초등학교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건축물인가

### 【답 변】

- ☞ 학교설립 인가와 관련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는『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 인가 시에만 해당됨. 단, 도시계획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함

## ■ 질 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3항 1호 및 7호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으로 도시관리 계획 결정(체육시설, 도로)을 변경을 받은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을 받을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 사업 계획은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를 받는 경우는 개발사업단계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 【답 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한 도시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포함)를 받을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고 있음 다만, 같은 법 제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서 제외됨
- ☞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하여 재해영향 평가를 받는 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 ■ 질 의

- 홍수 시 농경지 및 가옥이 상습 침수되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항구적인 수방대책으로 배수펌프장 및 유입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임. 현재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해 유수지 및 유입수로 약40,000m<sup>2</sup>를 방수설비로 지정하기 위한 도시계획 시설결정 중에 있음. 본 설계를 수행하면서 침수방지대책에 대한 여러 차례 중간보고회와 전문가 자문을 득하였음. 이런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되는지

## 【답 변】

-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고 있음
- ☞ 또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는 별도의 절차를 이행하는 제도가 아니라 수립 확정 · 허가 · 인가 · 승인 · 결정 등을 할 시에 재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협의하는 제도로서 방재시설의 경우에도 해당됨

## ■ 질의

- 최초 사업을 시행하기 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나와 있는데 사업시행 중 설계변경 혹은 기하구조변경 등 변경 건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는가?
-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서 도로개설사업을 하는데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관련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 사업 시행 중 경미한 사항(종단경사 변경 및 도로 횡단 통로박스 통과)에 대해 변경을 할 때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아야 하는가?

## 【답변】

- ☞ 변경을 수반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해당법령에서 변경사항을 규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이 아님

## ■ 질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등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자 할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실시계획인가(사전재해영향성검토 포함)를 득하지 않고 공사가 완료 되어 관련 개별법에 의거 의법(고발)조치되었음. 처벌 조치되고 실시계획인가를 추인(불법에 대한 처벌조치하고 관련법 협의 후 적법한 범위 내에서 허가)을 받고자 하였으며,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협의 하였으나 자연재해대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협의가 되지 않고 있음. 이런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 법적취지는 이해되지만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관련법에서 적합한 범위 내에서 추인이 되도록 함이 향후 공익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관련법(자연재해대책법등) 검토결과 보완사항이 필요할 경우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보완시공 조치할 예정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위해서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어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실시계획인가를 추인할 수 없는 상황임.

## 【답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한 도시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함

- ☞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는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지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사업시행청과 협의권자가 판단하여 처리할 사안이라고 사료됨.

## ■ 질 의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질의를 드립 사업대상지는 ○○시 조례에 의거 지방재해영향평가 대상 사업임
  - 도시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구역 지정 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여부?
  - 도시개발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 여부?

## 【답 변】

- ☞ 『도시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지정을 받을 경우에는 지구지정 전 또는 개발계획 수립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함
- ☞ 다만,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하여 재해영향평가를 받는 대상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 ■ 질 의

- 지난 1961년부터 현재까지 40년이 넘게 초등학교로 이용되어 온 부지가 있음. 현재 다른 공공기관 소유로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해당 소유기관에서 부지를 학교시설로 도시관리계획 시설변경 결정을 완료한다면 무상임대 및 매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시설변경 결정을 위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미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소규모 초등학교 시설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 ● 학교부지 현황

- 총면적 : 16,936m<sup>2</sup>, - 도시관리계획 시설변경 결정 완료 면적 : 11,098m<sup>2</sup>
- 도시관리계획 시설변경 결정 추가 면적 : 5,838m<sup>2</sup>

## 【답 변】

- ☞ 도시계획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포함)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고 있음
- ☞ 다만, 같은 법 제30조제5항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거나, 개발절차 없이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소유권 변경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의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 질 의

- 본 사업은 개간사업으로 현재 임야로 이루어진 약 80,000m<sup>2</sup>의 토지를 개간하여 과수원으로 이용하고자 함. 과수원의 특성상 과도한 절·성토는 발생하지 않고 최대한 현재의 지형을 이용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곳으로 이런 경우에도 사전 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 【답변】

- ☞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한 농지확대개발사업(개간 등)일 경우에는 제6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고 있음

## 질 의

- 전원마을조성사업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농어촌정비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개발계획 수립 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여기서 한 가지 문의를 드리면 『농어촌정비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즉 전원마을조성사업개발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의 마을정비 구역 지정 승인을 득한 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렇다면 기본계획 수립 시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 【답변】

- ☞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제31조2의 및 제34조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고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제외됨.

## 질 의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사대지(학교용지)는 학교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시행 규칙 제16조제2항 중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의 변경인 경우)에 해당될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답 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전 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서 제외됨

## ■ 질 의

-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기반조성(부지정지)이 완료된 상태이며, 기반조성이 완료된 부지에 인삼공판장을 설치하고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 사전 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 【답 변】

-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전 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함 다만,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15만 m<sup>2</sup>이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전 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서 제외됨

## ■ 질 의

- 본 사업장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산업형)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2005. 9)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며(행정계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개발사업)에 포함됨.
- 위와 같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해당될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두 번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한번에 협의를 받을 수 있는지?

## 【답 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행정계획단계로서 사전에 각종개발계획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검토·협의하는 것으로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시에 협의를 거쳐야 하며,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설립을 할 경우는 개발사업단계로서 재해영향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 등 보다 구체적인 재해예방 사항을 검토·협의하는 것으로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 시에 협의를 거쳐야 함.

## ■ 질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결정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으로 조성계획 결정전 받기로 되어있음 조성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 인가 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다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답변】

- ☞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는 개발사업단계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결정 시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았다면 중복해서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 ■ 질의

- 당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원지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 부지면적은 총 1,200만m<sup>2</sup>로 본 유원지 내에는 자동차경주장, 유원시설업 등을 운영하고 있음. '06. 3월 유원지 실시계획 변경인가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관련행정기관에 협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금회 다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진행하고자 하며, 자동차경주장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진행하고자 함.

- 1) '06. 3월 유원지 1,200만m<sup>2</sup>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은 후 금회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2) 유원지 1,200만m<sup>2</sup>에 대하여 실시계획변경 인가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은 지역에서 즉, 1,200만m<sup>2</sup> 부지 내에 운영중인 자동차 경주장 부지면적이 267천m<sup>2</sup>로 이중 조경지역 일부를 자동차 경주장 지역에서 제척(103천m<sup>2</sup>)하여 자동차 경주장 부지면적이 164천m<sup>2</sup>로 변경되었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고자 함. 유원지 1,200만m<sup>2</sup> 부지면적은 변경이 없으며, 유원지내 자동차 경주장 부지면적을 변경하였을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답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포함) 인가를 받을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고 있음 다만, 같은 법 제88조제3항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사업 계획(변경 포함)을 승인 받을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함 다만, 같은 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됨

## ■ 질의

-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2-2-6(1)호와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2005년에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에 주민공람을 실시코자 함. 금회 지구단위계획에서 변경 코자 하는 부분은 당초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미 포함된 시청 및 도서관, 시민 회관을 포함하고 시청사 주변의 일부 소로망의 폭원을 확장, 예정지구 외곽의 도로 법면 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는 수준임. 이러한 경우 현행 자연 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답변】

-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고 있음

## ■ 질의

- 2004년 10월 공원조성을 완료한 어린이공원임. 기존 건물 2층에 휴게실을 증축 하고자 할 경우 공원조성계획 변경(건축연면적증가)을 해야 건축허가가 가능함. 이때 기존 건물 2층에 휴게실을 증축하고자 함에 있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답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변경 포함) 결정의 경우는 조성계획 결정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함 다만, 귀하의 질의와 같이 단순 기존건물 증축 변경과 같이 재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 ■ 질의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사업진행 중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로서 협의매수에 실패한 토지 등의 수용절차를 위해 확정측량을 하였을 경우 전체 면적 및 위치의 변화는 없으나 지번별 편입면적 변동으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 계획(변경 포함) 인가를 받을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고 있음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바와 같이 기인가 받은 도시계획시설(도로)의 면적 및 위치변경이 없는 단순 지변별 편입면적 변경과 같이 재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됨.

## ■ 질 의

- 개인이 농어촌정비법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개간대상지선정 신청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 ☞ 귀하께서 질의하신 개간대상지선정 신청시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지 않으나, 농어촌정비법 제6조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수립 시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고 있음

## ■ 질 의

- 2003년 모든 사업(폐기물처리시설)이 종료되었고 아래와 같이 변경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받을 시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1) 변경사항 : 시설부지 면적변경( $83,613m^2 \Rightarrow 86,610m^2$ )
- 2) 변경사유 : 사업시행 중 지형사정으로 인한 비탈면 등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 확정측량 결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중 면적산정의 착오 정정

## 【답 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 계획(변경 포함) 인가 시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고 있음.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는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지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사업시행청과 협의권자가 판단하여 처리할 사안이라고 사료됨.

## 2. 산업 및 유통단지조성 분야

### ■ 질의

- 공장설립 경우 기존부지 및 건축물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기업체가 들어와도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 및 부지 조성이 없는 상태에서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건축물 및 부지의 변경 없이 업종변경만 있는 상황에서도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답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의하여 사전재행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함 다만 건축물의 증·개축 및 부지조성이 없는 경우, 업종변경 등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 ■ 질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의제처리로 협의하여 승인하는 사업계획승인의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답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를 의제 처리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 ■ 질의

- 질의1) 본인은 기존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이 부족하여 건축면적 약50평을 증축 하고자 할 경우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아야 하는지요?  
※ 참고로 50평 증축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대상도 아니고 건축을 증축한 다음 건축신고만하면 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3조에 해당이 되지 않아 공장설립변경허가 대상도 아님. 이럴 경우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 질의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공장설립허가, 공장설립변경허가 및 신고대상일 경우에는 대지면적 및 건축면적이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모두대상이 되는지 여부?
- 질의3) 대지면적 및 건축면적이 증·감이 없고 단순한 대표자변경 및 업종변경일 경우에도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질의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및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사업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여부?

## 【답 변】

- ☞ 답변1,2,3)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500m<sup>2</sup>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일 경우에 사전협의하고 있으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후단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서 제외됨.
- ☞ 답변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 ■ 질 의

- 조그마한 자동차부품제조업으로 공장설립을 하여 관리지역 내에 부지면적 1,400m<sup>2</sup>이고, 공장을 450m<sup>2</sup>, 사무실을 60m<sup>2</sup>로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시·구청 방재과에 협의하여야 하는지?

## 【답 변】

- ☞ 대상사업에 대한 구체적 법령을 명시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공장건축 면적이 500m<sup>2</sup>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일 경우 사전협의하고 있음.
- ☞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승인권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는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자연재해담당부서)과 협의하여야 함.

## ■ 질 의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은 공장설립 승인 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협의대상 면적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공장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 시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언제부터 협의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 【답 변】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의 면적규모를 별도로 정한 규정은 없으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공장창업사업계획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이 아니며, 참고로 공장창업사업계획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별도 인·허가 등을 득하여야 하는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관계 실·과)의 장과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거쳐야 함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일(2005. 8. 17) 이후 수립되는 행정계획 및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은 관계행정기관(관계 실·과)의 장과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함

## ▣ 질의

- 2005. 8. 17일 이전 공장설립 승인을 득 하였으나,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2006. 2월 명의변경으로 인해 공장설립 승인 변경신청을 한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변경의 경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명의변경, 업종변경 등)에 해당될 시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서 제외됨

## ▣ 질의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이 500m<sup>2</sup>이상인 경우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있고, 제3항은 공장건축면적 500m<sup>2</sup>미만인 경우라도 제1항에 의한 승인을 득 할 수 있는데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 500m<sup>2</sup> 미만의 소기업이라도 신청부지가 공장용지가 아닌 전, 답, 임야인 경우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를 복합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인지 여부 참고로, 복합민원이 아닌 개별허가 준공을 득한 후 공장등록을 신청할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답 변】

-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건축면적이 500㎡미만인 경우도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허가·신고·면허·승인 등을 의제처리 받고자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는 공장설립 승인 시에 재해영향에 관한 사항을 사전 협의하시면 됨

## ■ 질 의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 중『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 승인 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으나, 부지면적 및 건축변경 없이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업종분류외의 경우로 업종변경을 실시하는 경우 공장 변경 승인대상으로 이 경우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인지?
- 부지면적의 변경이 없고 건축면적만 증가하는 경우로 공장건축의 층수만 2층에서 3층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인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적용되나 기타 법에 의하여 공장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 【답 변】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후단 규정에 의한 산업 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 공장부지 및 건축면적감소, 세부업종변경 등)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거쳐야 함.

## ■ 질 의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 의한 검토협의 대상에 관한 질의임. 시행령 별표1중 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모든 경우가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하는지 여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의 경우 공업지역 등 지역이나 규모 또는 신·증축 구분 없이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모든 공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인지 여부?
- 준공업지역에 지목이 "답"인 4천2백 제곱미터의 부지를 농지전용(형질변경)을 받아 연면적 2천㎡ 제곱미터의 공장을 지을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여부?

## 【답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만 재해영향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고 있음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을 받는 경우는 재해영향에 관한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야 함

## ■ 질의

- '02. 5. 15일 시청으로부터 공장신설승인(전자직접회로 제조업)을 받았음. 그리고 공장건물 건축을 완공하여 '03. 2. 11 건물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사업의 양도양수로 회사명 및 대표자가 바뀌고 당초 공장신설승인을 받았던 제조업종인 전자직접회로제조업이 자동판매기 및 화폐교환기 제조업으로 바뀌었기에 시청에 '06. 2. 17 공장신설변경승인 요청을 하였을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여부?
- '04. 8. 30일 공장신설승인(기타인쇄업)을 받아 '05. 11. 10일 회사명, 대표자, 업종이 금속공작물제조업으로 바뀌었음. 그 후 '06. 2. 20일 임야를 공장부지로 전환하는 등록전환으로 인해 공부상 부지면적이  $24m^2$  증가하고, 도로부지  $54m^2$  증가로 당초  $2,224m^2$ 가  $2,302m^2$ 로 증가하여(총 증가78) 시청에 공장신설변경승인 요청을 하였는데 이 경우 공장 부지면적이 당초보다 20%미만의 증가로 공장관련법상 공장신설 변경승인이 아니고 변경신고대상이나 산지전용허가와 관련으로 의제 처리되어 변경승인으로 접수하였는데 이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여부?

## 【답변】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 공장부지 및 건축면적감소, 세부업종변경 등) 등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이 아님
- ☞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공장건축면적이  $500m^2$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일 경우에 재해영향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건축면적이  $500m^2$ 미만인 경우에 제13조의2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면허·승인 등을 의제처리 받고자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할 시에는 재해영향에 관한 사항을 사전협의하여야 함.

## ▣ 질의

- 기존의 공장용지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규로 공장을 신축하여 공장을 설립하고자 공장신설승인을 신청할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인지 현재 지목이 공장용지이고 개발행위 및 산지·농지 전용도 없으며 동일한 부지면적에 단지 공장건축물을 축조하는 행위임에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한 공장 신설승인대상에 해당되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 【답변】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신설) 승인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이행하고 있음

## ▣ 질의

- 본사는 소화기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기존건물 3개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사무실 및 식당으로 사용되는 1개동을 철거하고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3층 건물을 신축 하고자 합니다. 부지의 면적은 변동 없고( $5,016\text{m}^2$ ) 기존 제조시설의 면적  $1,434.5\text{m}^2$ 에서  $441.72\text{m}^2$ 가 증가된  $1,876.22\text{m}^2$ 로 증가되고, 기존부대시설의 면적  $645.22\text{m}^2$ 에서  $253.17\text{m}^2$ 가 증가된  $898.39\text{m}^2$ 로 건축면적(제조 시설의 증가)의 변경에 따른 공장증설승인을 득하고자 할 때 사전재해영향검토 협의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 【답변】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부지면적이 변경이 없고, 건축면적만 증가되는 공장설립 승인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중소규모 공장설립에 대하여 재해영향성검토를 충분히 하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공장설립 승인 관련 개선방안 중 건축면적 변경 사항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 질의

- 2005년도 당시 농공단지를 함으로써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없었으며 올해 농공 단지 변경승인을 하려고 함. 농공단지 승인당시 면적  $147,495\text{m}^2$ 으로 계획하였으나 협의 및 심의과정에서 공해수면의 면적을 최소화 하라는 해수부의 의견에 따라 공유수면을 줄여  $124,441\text{m}^2$ 으로 농공단지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농공단지 공유수면을 줄이는 반면 육지부를 늘려야 하나 늘리지 않고 계획승인을 받아 이번에 농공단지 변경을 하여 육지부 면적을 늘려 당초  $147,495\text{m}^2$ 로 하고자 하는데 현재 농공단지에서 우수와 오수(자체오폐수처리시설을 거침)가 모두 공유 수면으로 방류되어 해당이 없다고 들은 것 같은데 사실인지 아님 변경농공단지에 대한 면적이 추가됨으로써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 【답 변】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9조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변경) 지정 및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 (변경)승인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이행하고 있음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는 농공단지 변경지정의 경우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 ☞ 농공단지의 경우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지방재평 15만m<sup>2</sup> 이상 ~ 30만m<sup>2</sup> 미만, 중앙 재평 30만m<sup>2</sup>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함

## ■ 질 의

-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음. 공장부지 및 건축면적의 변경이 기존공장 면적률의 20%이상 증가되었는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해야 하는지
- 그런데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라 하여 변경승인 대상에 해당되나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사항은 제외라 하는데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건가요?

## 【답 변】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은 승인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고 있음. 부지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면적의 20%를 초과할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변경승인 시 승인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고 있음.
- ☞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는 부지면적 증가 없는 건축면적의 변경이나 부대시설 변경 및 업종변경 등과 같은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를 말함.

## ■ 질 의

- 공장을 새로 지으려면 공장신설승인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음. 이 두 가지 사항은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공장신설은 기존에 공장을 영위한 업체가 다른 지역에 새로이 공장을 설립할 때 하고, 중소기업창업공장 신청은 처음으로 공장을 설립하는 것임. 그런데 예를 들어 똑같은 신청지에 공장신설 신청을 하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 법에 의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위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시 복합민원이라 하여 의제처리를 똑같이 하는데 말입니다. 두 가지 사항을 똑같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데?

## 【답 변】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은 승인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고 있음.
- ☞ 현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이 아니나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에 포함되도록 검토할 계획임.

## ■ 질 의

- 당 사업은 국가산업단지 내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자 지정을 받아 공장설립을 할 계획으로 본 부지는 바다와 인접하고 전체부지 중 일부는 바다를 매립하여 사용할 계획이며 배수계획은 바다로 직접 방류 할 계획임
  - 1) 재해영향평가 시에는 바다로 직접 배수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도 적용되는지 여부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이미 지정된 지역의 경우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대상사업 중 바다에 직접 유출되도록 배수계획이 수립되어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 전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 설립 승인 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하나 산업단지 승인 시 사전 검토됨으로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에서의 공장설립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됨.

## ■ 질 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공장설립 승인 시 신청 면적 13,000m<sup>2</sup>, 도로점용 700m<sup>2</sup>, 구거점용 300m<sup>2</sup>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시 사업부지 신청면적, 도로점용, 구거점용을 포함한 14,000m<sup>2</sup>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공장설립 신청면적 13,000m<sup>2</sup>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 승인을 받기 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 시 대상면적(규모)은 공장설립 승인 신청 면적으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3. 교통시설의 건설

#### ■ 질의

- 현재 ○○고속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실시계획변경승인을 위해 지자체 협의 중에 있으며, 금번 변경사항은 철도건설법시행령 제14조제4항이 정하는 사항이 아닌 경미한 실시계획변경사항(건교부장관 승인의 변경이 필요치 않은 경우)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인지 여부?

#### 【답변】

- ☞ 『철도건설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변경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임 다만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이 아닌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서 제외됨

#### ■ 질의

- 철도건설 사업관련으로 시행하는 ○○선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 구간 중 ○○선 사업실시계획이 '05. 4. 16일자로 승인되었습니다.(건교부고시) 동 승인구간에 전기설비를 추가 사업실시계획변경 승인 요청 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동사업구간의 추가 전기설비 규모

- 변전소(4층, 층고:20m, 편입면적:3000평방미터) 1개소
- 구분소(2층, 층고:12m, 편입면적:600평방미터) 1개소
- 보조급전구분소(2층, 층고:12m, 편입면적:600평방미터) 4개소
- 송전 선로(지중 2.7km)

#### 【답변】

- ☞ 철도건설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함

#### ■ 질의

- 시·군에서 발주하는 군도, 시도, 지방도의 도로공사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답변】

- ☞ 지방도, 시도, 군도의 경우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에 해당되므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함

## ▣ 질의

-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를 할 경우 공사 시행 전에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축, 도로의 재포장, 보수 등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서 제외되는데 만약 도로의 선형개량(굴곡부)공사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그리고,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해당되는 않는 비법정도로의 도로 공사를 할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답변】

- ☞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선형개량(굴곡부)공사의 경우 절·성토 등을 수반할 시에는 재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도로공사 시행 전에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 ☞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해당되는 않는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 ▣ 질의

- 민자 철도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계획 다, 교통시설의 건설, (2) [도시철도법]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대하여 협의시기를 계획 확정 전이라 명기 되어 있고, 개발사업 라. 교통시설의 건설 [도시철도법] 제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시기를 사업계획 승인전이라 되어 있음. 그렇다면 민간제안 사업 시 실시계획 인가신청 전에 협의를 완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시 협의를 완료 하여야 하는 것인지?

## 【답변】

- ☞ 『도시철도법』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기본계획은 계획 확정 전과 『도시철도법』 제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계획은 계획 승인 전에 재해영향에 관한 사항을 사전 협의하고 있음.
- ☞ 그러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계획하는 경우는 행정계획단계에서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시에 재해영향에 관한 사항을 사전협의하고 개발사업단계에서는 같은 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시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시에 재해영향에 관한 사항을 사전협의 하여야 함.

## ▣ 질의

- '04년 11월 과업에 착수해서 '06년 12월 과업완료 예정인 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도입 이전에 발주된 용역인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여부 또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수행하여야 한다면 어떠한 항목을 수행하여야 하는지?

## 【답변】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일 이후에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공사시행 전에 재해영향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시 검토하는 항목은 중앙재해대책본부고시(2005. 12. 30)를 참고하시기 바람.  
※ 고시내용(소방방재청 홈페이지/사전재해영향성검토/관련규정/고시)

## ■ 질의

-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는 공사 시행 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는 도로의 신설, 개축, 수선에 해당하는 사업을 도로공사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도로의 재포장이나 규모의 관계없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또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사업계획 단계에서 사업계획 승인 전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로의 노선별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이 되는 도로의 노선을 선정하여야 함.
  1. 주민의 이용도, 2. 주민의 소득증대에의 기여도
  3. 주민의 교통편익에의 기여도, 4. 주민의 생활개선에의 기여도
  5. 도로망과의 연계성을 포함한 기초자료 단계에서 과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답변】

- ☞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경우 공사시행 전 관계행정기관(관계 실·과)의 장과 협의시 재해영향에 관하여 협의를 거쳐야 함. 다만 기존 도로의 재 포장, 수선 등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사업계획은 사업계획 승인전 관계 행정기관(관계 실·과)의 장과 협의시 재해영향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아울러 농어촌도로사업계획은 도로의 노선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지역의 자연 재해위험지구, 상습침수위험지구, 하천횡단 등 재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계획으로 판단됨.

## ■ 질의

- 농어촌도로 공사기간이 3~4년간 장기화 되고 예산이 당해연도에 100% 확보가 어려워 총괄계약 후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동일)계속 공사의 경우에도 매년 다음연도의 예산계상을 위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을 받고 있음.

- 상기와 같이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2005.08.17) 이전에 총괄 계약되어 사업이 착수된 동일사업에 대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여부
- 대상이 될 경우 앞으로도 매년 동일사업에 대하여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아야 되는지 여부

### 【답 변】

- ☞ 농어촌도로사업계획의 경우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매년 다음 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 승인 시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일(2005. 8. 17)이전에 전체사업구간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사업진행중인 경우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 참고로 전체사업구간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쳤다면 매년 동일 사업구간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는 중복하여 이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 ■ 질 의

- 『사도법』 제4조에 의한 사도개설허가가 협의대상인지의 여부?
-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는 협의대상에 포함되나, 본 사도개설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답 변】

- ☞ 『사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의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 ■ 질 의

- 본 사업은 민통선내 출입국관리시설(C.I.Q)설치 사업으로 「철도건설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단계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사업인지 여부?
- 주요 유치시설로는 Yard 및 공공시설, 동물검역계류장으로 구성되어있고, 이용 면적은 233,300m<sup>2</sup>로 지침서 상에 의한 개발단계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인지 여부?
- 현재 계획구역은 Zone1~Zone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수체계를 보면 Zone1의 경우 동해로 바로 방류(이격거리 200~300m), Zone2의 경우 Zone2내의 ○○천이라는 소하천으로 일괄배수 후 동해로 최종방류(이격거리 300m 내외), Zone3의 경우 사업지역을 관통하여 Zone2와 같이 ○○천으로 배수 후 동해로 최종 방류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을 보면 "바다로 직접 유출되도록 배수계획이 수립되는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사업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사업의 경우 Zone1~Zone3의 모든 배수는 ○○천으로 일괄 배수 후 최종적으로 동해로 방류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본 사업의 경우 위 규정에 대한 적용이 가능한 사항인지?

### 【답변】

- ☞ 『철도건설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이행하고 있음
- ☞ 다만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바다로 직접 유출되도록 배수계획이 수립되는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 ▣ 질의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 시기에서 정한 개발사업 중 교통시설의 건설사업 중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협의 시기는 공사시행 전으로 되어 있음. 여기서 정한 공사시행 전은 공사를 위한 제반 행정준비를 마친 실시설계 완료 후의 단계를 말하는 것인지?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공사시행 전인 도로구역의 결정단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 【답변】

- ☞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시기는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경우 실시설계 완료 후의 공사시행 전 단계에서 사전재해영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있음.

### ▣ 질의

- 본 사업은 ○○공항 SKY PARK 공항개발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공항 국제선 청사 전면 주차장 및 녹지시설에 부지면적 194,874m<sup>2</sup>의 지하5층, 지상9층 규모인 ○○ 국제공항 SKY PARK를 조성하는 사업임. 항공법 제154조에 의해 항공안전 본부에서 ○○지방항공청으로 협의 및 승인권이 위임됨. 동법 제89조제2항에 의한 기본계획 인·허가를 득하였으며, 동법 제94조에 의한 사업시행허가 요청 중에 있음. 본 사업에 대하여 동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단계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아니면 부지면적 15만m<sup>2</sup>이므로 지방재해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

### 【답변】

- ☞ 항공법 제95조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고 있으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 대상은 아님

## 4.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 질의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소하천1개소 연장 1.5km)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이 사전재해영향검토협의 대상인지 여부?

### 【답변】

- ☞ 『소하천정비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입니다

### ■ 질의

- 하천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이 2004. 10. 28 ~ 2005. 10. 27까지로 계약 할 당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가 시행 전이었으며 초기 준공기한을 2개월 10일전부터 시행되었는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여부?(협의제도의 시행일인 '05. 8. 17가 용역 계약시점기준인지, 준공기준인지)
- 하천법 제11조의 2에 의해 수립하는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답변】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일('05. 8. 17)이후에 수립되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함.
- ☞ 『하천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 ■ 질의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를 보면 하천의 이용 및 개발협의 부분 중 시행계획에 있어서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관한 것만 있고, 지방2급이나 국가하천 시행계획에 관한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한지 여부

### 【답변】

- ☞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의 경우 개발사업단계인 하천정비시행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됨

## 질 의

- 택지개발계획 등이 재해영향평가를 거쳐 수립 승인된 상태에서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지구 내 또는 인접한 하천의 선형변경 등이 발생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 별도로 하천정비기본계획(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사전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 하천의 일부만이 지구에 포함된 경우와 전체구간이 포함된 경우가 다르게 적용 되는지?

### 【답 변】

- ☞ 『하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변경 포함)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획 수립 전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거쳐야 함.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는 별도의 절차를 이행하는 제도가 아니라 계획수립 등을 하고자 하는 계획(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시에 재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협의하는 제도임.

## 질 의

- 본 사업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폐교 및 정수장을 개발하여 주민 복리시설을 계획하는 것으로서 산지 지역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되므로 근거법에 의한 대상사업은 아닌 것 같으나 사업지역이 자연환경보전 지역으로써 사업시행과 관련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의 근거가 있는지?

### 【답 변】

-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댐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계획수립 전 또는 승인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함

## 질 의

- 하천 수해복구공사의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지침서를 본 바로는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 개발사업의 범위인데 지방2급 이상 하천의 수해복구공사 및 소하천수해복구공사의 경우가 해당이 되는지? 또한, 하천 개수 공사의 경우(지방2급 이상, 소하천)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현 법상으로 대상이 되는지? 아니라면 대상범위를 추가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답 변】

- ☞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하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전 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하며 소하천의 경우는 『소하천정비법』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 전과 시행계획 수립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고 있음
- ☞ 참고로 지방2급 이상 하천 등 각종 시설 등에 대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5. 수자원 및 해양개발 분야

### ■ 질의

- 본 사업은 소규모어항 개보수사업으로, 기존선착장 20m, 신설선착장 30m 전체 50m임 이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여부?
- 물량장 보수공사로서 기존물량장의 노후화로 인한 보수공사일 경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여부?

### 【답변】

- ☞ 어촌·어항법 제23조(구 어항법 제12조)에 의한 어항시설사업계획은 사업계획 확정 전 또는 허가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질의

- ○○도 ○○시에 소재한 ○○항은 도지사가 개발하는 어항으로 어촌·어항법 제23조(구 어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01년도 어항개발사업을 착수하였으나, 지방재정 형평상 총액 발주가 어려워 매년 사업비 확보 범위 내에서 어항개발계획에서 결정된 기본 단면에 의하여 실시설계 후 어항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답변】

- ☞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일('05. 8. 17)이후에 『어촌·어항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또는 허가하는 경우에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임

### ■ 질의

- 항계선내에서 항로준설공사(굴착공사)를 시행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해야 하는지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문의하오니 항로준설공사의 경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여부?

### 【답변】

-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제1항 근거에 의한 별표1에 의한 수자원 및 해양 개발에 관한 관련법만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임

## 질 의

- 면적이 약35,000m<sup>2</sup>의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한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에 의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수행함에 있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여부?

### 【답 변】

- ☞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요청의 경우는 자연 재해대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다만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의 경우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임

## 6. 산지의 개발 및 골재채취 분야

### ■ 질의

- 『산지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후 면적의 증감 등이 있어 변경 허가 시에도 사전 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답변】

- 『산지관리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 변경 허가의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전 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함

### ■ 질의

- 채석허가 신청시 산지관리법 제25조에 의하면 채석허가 시 재해영향평가 대상 사업 면적에는 해당되지 않고(15만 평방미터 미만) 또한 표2-1 행정계획과 표 2-2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을 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사전 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답변】

- 산지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채석허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의한 사전 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 ■ 질의

- 사설 개인 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면적 제한으로 3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전 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여부?

### 【답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 설치의 경우 묘지 허가 전(신고대상 제외)에 자연재난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함.

### ■ 질의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의 개발사업에서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7. 산지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사업이 아닌 산지관리법 제14조, 광업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해당할 경우에는 사전 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여부?(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아님)

### 【답변】

-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 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함

## ■ 질의

- 공설장사시설을 조성하려고 기본계획용역을 2005. 6월부터 진행하여 현재 용역이 완료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신청 준비 중에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이 됨. 개정 자연재해대책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용역을 진행 하였어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여부

### 【답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확정(안)이 자연재해대책법시행일('05. 8. 17) 이후에 도시 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제출된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함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설시 계획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의 설치는 『자연 재해대책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 해당됨

## ■ 질의

- 본 사업은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면적 30,693m<sup>2</sup>에서 총 골재 채취량 58,035m<sup>3</sup>(모래, 자갈)에 따른 골재(육상골재)채취 허가신청을 관할관청에 하였던바, 골재채취량 30,000m<sup>3</sup>이상인 경우로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아야 되는지 여부

### 【답변】

- ☞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의 경우 육상골재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는 경우는 재해영향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 ■ 질의

- 사전재해영향검토협의 - 개발사업 - 사(6) "석탄산업법" 제39조의9 규정에 의한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이 실무지침서 대상별 사업절차 및 협의요청시기에 중앙 본부장에게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군에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 요청 시 소방방재청으로 검토 요청해야 하는지 여부

### 【답변】

- ☞ 『석탄산업법』 제39조의9 규정에 의한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확정권자가 중앙 행정기관의 장일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도지사가 확정권자일 경우는 시·도 재난안전대책 본부장과 재해영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함.

## ▣ 질의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별표1 행정계획 - 바.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7)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에서의 협의대상이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라고 한정되어있으나 산지개발이외의 농지전용 등의 개발행위를 할 때에도 채광계획인가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채광계획인가와 관련법에 의하여 의제처리 되는 개발행위 등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별표1 개발사업-가-(1)개발행위허가의 경우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대상인지 누가 판단하여 협의요청 해야 하는지?

## 【답변】

- ☞ 광업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임
- ☞ 광업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 인가시 의제처리 되는 개발행위허가는 별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됨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은 같은 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부서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 질의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여부?
  - 신청면적 : 10,565평방미터, - 전용목적 : 광물채굴(고령토)
  - 관련 법 :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신청

## 【답변】

-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에 대하여 별도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경우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함.

## ▣ 질의

- 토지에 공공목적으로 성토재료 조달을 위해 산지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토사채취허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용도지역 : 농림지역, 산림 : 보전임지(생산)로서 토사채취면적( $14,000\text{m}^2$ ), 토사채취량( $40,000\text{m}^3$ )일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조제1항 관련 개발사업으로 보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자

## 【답변】

- ☞ 『산지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임

### ■ 질의

- 금회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을 받으려고 준비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합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고자 하는데 면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고 또한 산지에 가족묘지 및 종중묘지허가(30평 및 300평)을 득하고자 하는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정확한 면적을 알고자 합니다

## 【답변】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는 묘지설치 등의 개발행위를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대책마련을 하기 위하여 시·군·구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허가토록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가족묘지, 종중묘지, 법인묘지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해 영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함.
- ☞ 다만 규모가 작은 경우에 대하여는 묘지설치에 따른 배수처리계획, 형질변경에 따른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저감계획, 주변지역 피해발생요인 검토 및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묘지설치 허가 신청시에 제출하면 됨.

### ■ 질의

- 당 사업장은 채광계획 인가(당초면적 약 30,000m<sup>2</sup>)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법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사업으로 행정계획 및 범위(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규정에 따라 채광계획 인가 신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를 작성하였으나 당 사업장의 사업계획 변경(변경면적 약 9,000m<sup>2</sup>)으로 면적을 축소하여 채광계획 인가를 추진할 경우 기존에 작성된 검토서로 협의가 가능한지 여부?

## 【답변】

- ☞ 광업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은 채광계획 인가 시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고 있으며 관련서류 등은 인가 신청에 적합한 면적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7. 관광단지개발 및 체육시설

### ■ 질의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별표 1]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사관 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항을 보면 관광진흥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지정 시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100만m<sup>2</sup>이상의 관광단지에만 해당하고 관광지 지정 시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여부

### 【답변】

- ☞ 『관광진흥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관광지지정 및 같은 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관광지 조성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이 아님.

### ■ 질의

- 스키장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는 관광지 권역계획변경, 용도지역 관리계획 변경을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이고, 사업범위 내에는 농림지역과 도시계획구역이 공존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아직 사업지구 전체를 관광지구로 지정을 하지 않은 상황임. 이 경우 재해영향평가를 수행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수행해야 하는지 여부 협의 대상이라면 언제까지 검토서를 소방방재청에 제출해야 하는지(제가 알기로는 도시 관리계획 결정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답변】

- ☞ 관광지 권역계획(변경)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이 아님. 다만 이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시에는 관계행정기관(관계 부서)의 장과 협의 시에 재해예방에 관한사항을 협의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개발사업단계에서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하여 재해영향평가를 받는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서 제외됨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는 별도의 절차를 이행하는 제도가 아니라 인가 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 전)수립 시에 재해영향에 대한 검토 결과를 포함하여 협의하는 제도로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일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도지사가 결정권자일 경우는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재해 영향에 관한 사항을 협의 하여야 함.

## 질의

- 관광진흥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변경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초승인일 : 2004.10.30(사업승인시 사전환경성검토 완료)

### 사업계획변경내용

- 대지면적 감) 19m<sup>2</sup>, · 건축면적 감) 201.52m<sup>2</sup>, · 객실수 : 감) 31실
- 객실용도변경 : 콘도미니엄 증) 1,144.55m<sup>2</sup>, · 관광호텔 감) 2,350.59m<sup>2</sup>

상기와 같이 대지 및 건축, 객실수가 감소하고, 다만 객실에 대한 용도변경 증·감 사항만 발생할 시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여부

### 【답변】

- ☞ 관광진흥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계획의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나 사업계획 변경 내용(대지면적·건축면적 감소 등)상으로는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 질의

- 현재 사업계획 중에 있는 사업면적 11,354m<sup>2</sup>(지구면적 13,354m<sup>2</sup>)인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여부 만약 협의대상일 경우에는 어떤 협의 대상과 법에 의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지?

### 【답변】

- ☞ 관광진흥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계획은 재해영향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 ☞ 사전영향성검토협의를 위한 방법절차·검토항목 등에 관한 사항은 우리 청 홈페이지 참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관련규정/고시)

## 질의

- '97. 3월 관광지 지정, '97. 6월 조성계획 승인(면적 : 297,9000m<sup>2</sup>)된 관광지에 대하여 세부시설이 변경되어 구역면적이 297,900m<sup>2</sup>에서 299,380m<sup>2</sup>으로 증가되는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답변】

-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의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다만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의 경우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 해당됨

## ▣ 질의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온천개발계획 승인 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게 되어 있는 바, 당사의 경우 온천개발계획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 $276,469\text{m}^2 \rightarrow 188,815\text{m}^2$  / 감 $87,654\text{m}^2$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 당사는 온천공 3개 공을 개발하여 온천법에 의거 1994년 9월 9일 면적  $932,191\text{m}^2$ 를 ○○프라자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받았으며, 1996년 1월 22일 면적  $276,469\text{m}^2$ 에 대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수립·승인을 받았음.
- 2005년 온천공 1개 공을 추가 개발하여 2006년 7월 12일 면적  $972,744\text{m}^2$ 를 ○○프라자 온천원보호지구로 변경지정 받았음.

## 【답변】

- ☞ 『온천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승인 받을 경우에는 개발계획 승인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함.
- ☞ 또한 『온천법』 제10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 변경으로 온천개발 계획을 조정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함

## ▣ 질의

-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으로 2003년 3월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개발계획 포함) 고시’ 되어 있는 호텔부지에 대하여 관광사업 계획 승인을 추진하려고 함. 부지 면적은  $24,321\text{m}^2$ 이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시 사전환경성검토협의까지 완료된 사항임. 당해 사업에 관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답변】

- ☞ 『관광진흥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시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고 있음.

## ▣ 질의

- 98년도 관광단지 지정, 99년도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허가를 받아 추진 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향후 경미한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받아야 하는지와 협의대상이라면 검토협의 회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조성계획 승인권자는 도지사임)

## 【답 변】

- ☞ 『관광진흥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포함)을 승인 받을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함. 다만,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일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는 거치지 않아도 됨

## ■ 질 의

- 현재 온천을 개발하고자 시추를 하여 관한관청에서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득한 곳으로 금번에 온천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을 득하고자 함. 이런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여부?

## 【답 변】

- ☞ 온천공보호구역지정을 위하여 『온천법』 제5조 규정에 의해 승인 받는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 ■ 질 의

- 자연재해대책법 제정 이전인 2000년도에 온천법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부지면적이 변경 없는 상태에서 온천개발계획변경승인 신청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 ☞ 온천법 제10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 변경으로 온천개발계획을 조정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고 있음

## 8. 기타사업

### ■ 질의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자연재해 대책법 제5조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여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 해당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사항(의제 처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또는 실시계획 인가 대상인 경우에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답변】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자연재해 대책법 제5조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처리 하여 사업계획을 승인 하는 경우 자연재해 대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 ■ 질의

-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 2000.1.28 법률 제6252호) 제2조(종전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사업추진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여부?

### 【답변】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추진 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다만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서 정한 행정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별도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경우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함

### ■ 질의

- 현재 법령상으로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은 제외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 수립 지침에 의하면 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도시기본 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기본계획의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여부?

## 【답 변】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 계획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 관리계획(변경)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관계행정 기관(관계 실·과)의 장과 협의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함

## ▣ 질 의

- 농어촌휴양단지개발(농어촌정비법 66조, 제67조, 제70조)과 관련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중 (개발사업)부문에 가, 항 1번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의 협의 시기는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전에 협의 하여야 하나. 특구지정 후 농어촌휴양단지(15㏊) 지정을 통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 ☞ 『농어촌정비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단지의 개발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니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함.

## ▣ 질 의

- 하수종말처리장 개보수 공사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여부
  - 사업개요  
부지면적 : 196,599㎡ (1,2단계), 연면적 : 196,599㎡(건축면적 : 3,340평)  
고도처리공정도입 : 30.3 만톤/일(시설용량)기준  
기준시설 개선 : 30.3 만톤/일(시설용량)기준, 여과시설 도입 : 30.3 만톤/일(시설용량)기준  
방류펌프장 신설, 관련전기 및 계측제어 시설, 건축 신·증축 및 리모델링 등

## 【답 변】

- ☞ 위 내용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하수종말처리장 개·보수 공사의 경우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 ☞ 참고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하고 있음.

## 질 의

- ‘06년 3월에 설계된 사업으로서, 30년 이상 농업용수를 공급 하고 있는 용수로가 토공으로 되어있어 수초와 토사의 유입으로 농업용수 공급이 어렵고, 용수 손실이 많아 농민들이 영농에 매우 불편하여 해마다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콘크리트 개거를 설치하여 농업용수 손실을 방지하고, 누수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임. 공사 전·후에도 유역면적, 수혜면적, 용수량, 수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 【답 변】

- 대상사업 관련법이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다만, 토공 용수로를 콘크리트 개거로 설치하는 공사가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 질 의

- 현재 많은 용역회사들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재해영향평가서를 축소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 그러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실무지침서에 따르면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서와는 달리 그 형식과 진행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의 경우 "실무지침서에 있는 각 항목을 Title로 한 검토결과 형식을 취하면 되는지, 재해영향평가에 준하는 보고서가 필요한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 【답 변】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는 기존의 재해영향평가(당해 지역의 자체 우수유출 등 재해저감계획수립을 목적)와는 달리 계획수립·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당해 지역 및 인근지역의 재해유발요인 검토, 재해영향까지 검토·분석 하여 예방·저감대책을 수립함으로서 재해로부터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요청서는 재해영향평가서에 준하는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의 인·허가·승인 신청시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에 협의요청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중점 검토항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고시 제2005-18호, 2005.12.30,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사전재해영향성검토/관련규정/고시)에 해당되는 검토항목에 대한 현황·재해영향 검토 등을 실시하고 재해예방저감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면 됨.

## ▣ 질의

- 최초 협의시에는 市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협의 후 의견을 수렴하여 마무리 하였다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재협의를 받아야 되는지?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으로 2006. 5. 18일 이전에 사업계획(예산화보, 실시설계 등)이 수립되어 현재 공사 중에 있다면 공사 중이라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아야 되는지?
- 각종사업 담당부서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사업을 업무의 미숙 또는 고의 등으로 협의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가 우연히 담당부서에서 협의대상임을 알게 되었을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를 보는 부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사전협의를 받지 않은 대상이 행정계획일 때의 경우와 개발사업일 때의 경우의 조치 방법은?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사업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여부?

## 【답변】

- ☞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전에 중앙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한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이행한 것임
- ☞ 자연재해대책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4조 규정에 의한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할 수 없으며, 중앙지역본부장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치 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 사업시행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 질의

- 기업도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도시 기초조사 단계에 있음. 현재 지구지정을 위한 협의 중이며 본 사업의 경우 규모가 커서 재해영향평가의 대상임 사전재해에도 포함이 되는지 여부?
- 참고로 영향평가법에는 기업도시가 추가되었습니다만, 자연재해대책법 별표1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라 본 평가로 대체되는 건 아닌지?

## 【답 변】

- ☞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기업도시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 ▣ 질 의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실무지침서의 “입지 유형별 검토”에서 뚜렷이 구분되는 기준이 있는지? 산지나 농촌, 도시지역 같은 경우 확실히 구분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어려움은 없는데 가끔 임(30%), 전(20%), 답(10%), 잡종지(5%)등이 골고루 있는 경우 산지지역(임)으로 봐야할지 농촌지역으로 봐야할지 아님 두 지역 모두를 해당하여 검토해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시 입지유형별 검토항목의 적용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대상지역의 지목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로 판단되기는 하나, 현 지목과 용도가 상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당해 대상지역의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입지여건을 검토하고 그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유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 질 의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근거에 의한 별표1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중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으로 분리된 법적용 기준에 대해 명확한 유권해석에 대한 질의?

## 【답 변】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사업 중 행정계획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 할 경우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의 재해예방사항 검토를 주된 대상으로 적용하였으며 개발사업은 개발계획에 대한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재해영향에 대한 저감대책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주 대상으로 적용하였습니다만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은 개발과 관련된 계획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사업 시행 직전단계까지 추진과정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최종반영 하였음.

## 질 의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별표1에 보면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근거한 시설물(정수장, 하수처리장, 상·하수도관로 등)의 설치는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상기사업 설치인가 시 인가 청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보고서의 제출요구가 있어 몇 차례 제출한 적이 있음. 오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전문 업체에 문의하면서 상·하수도 사업은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문의 드림.

### 【답변】

- ☞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의한 상·하수도 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은 아니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 시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고 있음

## 질 의

- 수해복구공사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와 거쳐야 한다면 수해복구공사 모든 사업이 대상인지 아니면 사업량 및 사업에 따라 다른지 여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원상복구시설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답변】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수해복구공사도 상기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거치고 있음. 다만, 같은 법 제5조제2항 1호 규정에 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됨.

## 질 의

- 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얻어 공장 공사를 하던 중 강우에 의한 산사태로 부득이 부지정리를 다시 실시하기 위하여 산지전용변경허가(일시전용) 및 부대시설의 위치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여부 참고로 공장부지 면적 및 건축면적의 변경은 없으며, 공장증설변경 승인 대상도 아님.

### 【답변】

- ☞ 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변경) 허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은 아님

## 질 의

- 해양 낚시공원을 해상 수심 6~11m 정도에 설치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체 계획 면적이 15,000m<sup>2</sup> 정도이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여부?

### 【답 변】

-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대상 사업에 대한 근거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점·사용허가를 받는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 질 의

- 현재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수행 중에 있으며 사업대상의 실시근거가 1.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지정, 2. 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해당되어 현재 사업을 동시에 추진 중임. 이와 같이 두 가지의 실시근거에 해당되는 경우 각각에 대해 사전 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 ☞ 지방산업단지의 지정 및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은 행정계획단계로 중복해서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 질 의

- 본 사업은 ○○시 ○○○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서 2006년 6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았으며 개발사업단계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시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결정전에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은 개발사업단계로 중복해서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 개별법 규정에 의하여 의제처리 되는 경우 협의대상 여부

### 질의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득할 경우 주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1종 지구단위 계획(도시관리 계획) 등을 결정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득해야 하는지?

### 【답변】

- 주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처리 하는 경우 별도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받지 않아도 됨.

### 질의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의제 처리하여 승인하는 사업계획 승인의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답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를 의제 처리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자연 재해대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 질의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득할 경우 주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등을 결정, 도시관리계획의 경우처럼 의제처리토록 되어있는 경우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득해야 하는지 여부?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득할 경우 개발행위협의 대상으로 사업부지 면적이 10,000m<sup>2</sup>이상인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받는 사업임. 이런 경우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득해야 하는지 여부?

### 【답변】

- 『주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 처리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주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 처리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질의

- 사업계획승인을 진행 중인 사업으로 2005년 7월 13일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 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을 받았으며 동년 7월 12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허가 관청으로부터 설계도서 미비로 인해 보완을 받아 2006년 3월 보완을 완료하고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각과 실무협의를 진행 중임. 이 경우 『주택법』 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처리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와 동법 88조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 계획의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득하여야 되는지

### 【답변】

- ☞ 주택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 처리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와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사업실시계획의 경우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 질의

- 주택법 제17조에 의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기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득해야 하는지 여부
- 주택법 제17조(다른 법률에 인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라는 구절이 있으며, 동조 3항은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미리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함”이라고 명시된바, 여기서 말하는 “해당법률”의 범주에 “자연재해대책법”이 포함되고, “관계서류”는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가 해당되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득해야 하는지 여부

### 【답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고 있음
- ☞ 다만, 『주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 처리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 ☞ 『주택법』 제17조제3항의 내용 중 “해당 법률”은 제1항 각호의 1에 포함된 법률을 말하여, “관계서류”에는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서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질의

-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의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에는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주택법』 제17조 규정의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 사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동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이 포함되어 있음. 이 경우 의제처리 되는 도시관리 계획의 변경, 개발행위의 허가, 실시계획의 인가에 대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답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고 있음
- ☞ 다만, 『주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 처리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동법 제2조제4호 다목의 계획 및 동호 마목의 계획중 동법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한함)의 결정, 동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의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됨.

##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여부

### 질 의

- 골프장 조성사업(18홀)으로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 되는 사업으로, 도시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골프장)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답변】

-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별표 1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하여 재해영향평가를 받는 대상사업은 사전 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나 동 골프장 조성사업은 사업계획수립을 위하여 행정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임

### 질 의

- 사업면적 290,000m<sup>2</sup>의 지방산업단지를 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거 제외대상이 되는지 여부?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면 협의 시기는 언제이며 제출 협의 도서는 어떤 형식인지?

### 【답변】

- ☞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지방산업단지의 지정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행정계획)에 해당되며, 동법 제18조에 의한 지방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 1의 단서 규정에 의거 재해영향평가를 받는 대상사업일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개발사업)사업이 아님.
- ☞ 행정계획단계인 지방산업단지의 지정을 위한 협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단지 지정 전에 협의하여야 함.

### 질 의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이행해야 하는 개발사업 이라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에 의하여 재해영향평가를 받는 대상사업은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1에 의하면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이라도 동법시행령 별표1의 비고 7에 의하여 “바다로 직접 유출되도록 배수계획이 수립되는 사업”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개발사업이 위 ①과 ②의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될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여부

## 【답변】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바다로 직접 유출되도록 배수계획이 수립되는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사업에도 제외됨

## ■ 질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금년 상반기까지 몇 차례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최근 사업계획에 일부 변경이 있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준비 하던 중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금년 8월부터는 유원지와 같은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하여 재해영향평가를 받는 대상사업을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유원지 사업 부지면적이 30만m<sup>2</sup> 이상으로서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답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개발사업)에 해당되나, 귀하의 경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므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별표1 단서 규정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하여 재해영향평가를 받는 대상사업을 제외한다”에 의거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서 제외됨

## ■ 질의

-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은 30만m<sup>2</sup> 이상일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전에 재해영향평가를 받게 되므로, 지구지정 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고 실시계획 전에 재해영향평가협의를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다면, 30만m<sup>2</sup> 미만일 경우에는 지구지정 전, 실시계획 승인 전, 즉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2회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 ☞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면적 범위는 지방재해영향평가 15만m<sup>2</sup> 이상 ~ 30만m<sup>2</sup> 미만, 중앙재해영향평가 30만m<sup>2</sup>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5만m<sup>2</sup> 미만의 택지 개발 및 도시개발사업은 지구지정 전과 실시계획 인가 전에 각각 재해영향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 ■ 질 의

- 회원제 골프장(18홀)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변경(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을 한 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자 할 때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개발사업 내용의 후단에 “개발 사업의 경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받는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는데 본 사업은 재해영향평가 대상 이므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

## 【답 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하며,
- ☞ 개발사업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골프장 18홀)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를 받는 대상사업이므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서 제외됨

## ■ 질 의

- 사업개요
  - 사업의 목적 : ○○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 - 위치 : ○○남도 ○○군
  - 배수조건 : 바다로 직접방류
  - 사업면적 : 3,173,760 m<sup>2</sup>, - 개발기간 : 2005년 ~ 2015년
-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하여 재해영향 평가를 받는 대상사업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상기와 같이 바다로 직접 방류 되는 조건으로 인하여 재해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아닐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여부?

## 【답 변】

- ☞ 행정계획의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 단지 지정 전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하며,

- ☞ 개발사업 단계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 단지개발 실시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에 해당됨. 다만 배수처리 계획이 바다로 직접 방류되는 계획으로 재해 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서 제외됨

## ▣ 질 의

- 본 사업은 면적 150만m<sup>2</sup>인 도시공원(생태공원) 개발사업으로 배수계획은 바다에 직접 유출되도록 수립되었으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3.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중 다. 관광단지의 개발 (5)도시공원 법에 의한 30만m<sup>2</sup>이상인 사업에 해당되나, 비고 7항에 제시된 “바다에 직접 유출되도록 배수계획이 수립되는 사업은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 한다”는 조항에 의해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아니나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 【답 변】

- ☞ 도시공원(생태공원) 개발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전문개정 2005. 3. 31 법률 제7476호)』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시에 재해영향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하고 있음.
- ☞ 그러나 바다에 직접유출 되도록 배수처리 계획이 수립되는 사업계획으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 ▣ 질 의

- 대상사업은 골프장 조성사업으로써 재해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하고 공사 중에 있음. 금회 토지이용계획 변경(부지면적 증가, 저감시설 규모 변경 등)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고 함.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완료 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법』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재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현 상황에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행정계획 단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은 행정 계획단계로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시에 재해영향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서 작성 대행자, 대가기준, 조례 및 검토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 ▣ 질 의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행업을 하려면 어떤 자격요건이 필요한지 여부?
- 면적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개발행위, 산지전용, 공장설립, 도로 등)

### 【답 변】

-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는 현 자연재해대책법에 대행자 등록조건은 없으며,
-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사업은 개별법에서 승인·허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면적기준 외에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

### ▣ 질 의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시에서 조례 제정함에 있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먼저, 법 제4조 5항 규정에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법령상에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운영함에 있어 검토위원회를 꼭 조례로 구성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강제조항인지, 아니면 검토위원회 구성을 아니 하고 담당공무원의 검토를 통하여 협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는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해영향에 관한사항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로서 대책본부 담당 공무원의 검토·협의 처리가 가능하나,
- ☞ 협의대상 사업의 범위가 다양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많으므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질 의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5항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시 검토위원회에 자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기준이 있는지요? 아니면, 담당자 임의로 결정해야하는 사항인지?
- 또한, 검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히 검토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해야 하는지?

### 【답 변】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검토의뢰 대상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판단할 사항임.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례제정에 관한 사항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판단할 사항임.

## 질 의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따라 중점적으로 검토할 항목과 검토방법 등에 대하여 고시한 사례가 있는지? 사례가 있다면 어떤 항목과 방법인지?

### 【답 변】

- ☞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중점 검토 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2005. 12. 30 고시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우리청 홈페이지(사전재해영향성검토/관련규정/고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고시 제2005-18호) 참고

## 질 의

- 지방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군 단위 지자체의 위원장은 누구인가?
- 그리고 위원구성에 있어서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공무원도 포함이 되는 여부?

### 【답 변】

- ☞ 국장급 공무원이 없는 “시·군”의 경우 지방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한 경우 공무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으로 위촉 가능함.

## 질 의

### 위원회구성과 관련하여 질의

-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를 해주어야 하는지 ?
- 공무원이 위원회 구성 시까지 협의를 대신할 수 있는지 ?

## 【답 변】

-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는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해영향에 관한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협의요청 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로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더라도 협의처리를 하여야 함.

## 질 의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승인기관)이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본부장에 통보하여야 하는 데, 통보받은 날이 관계행정기관이 받은 날로부터 30일인지? 사업자가 관계행정기관에서 통보받은 날로 30일 인지?

## 【답 변】

-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부터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질 의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 경우 조례가 없을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협의 하여야 하는지?

## 【답 변】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과, 결정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과 협의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우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자연재해 대책법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야 함.

## 질 의

- 이제 시행 1년이 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가 아직도 설계사무소 용역 회사에서 작성 제출되고 있는 실정임. 자격조건이 갖춰지지 않아 재해영향 평가서에 못 미치는 협의서가 대부분으로 부족한 점이 너무도 많음. 공장의 경우는 설립비가 1, 2억 하면서도 이 협의서 작성을 위해 2천만원이나 들여 작성해오는 곳도 있음. 협의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는 언제 결정되며, 작성 자격 요건은 언제쯤 갖춰져 전문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게 되는지 여부?

### 【답 변】

- ☞ 현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서 작성을 위한 대행자 자격기준 및 대가기준을 별도로 정한 규정은 없으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서의 내실있는 작성을 위하여 가능한 금년 내에 일정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제의 도입과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을 고시하도록 추진 중에 있음.
- ☞ 참고로 공장설립 승인과 관련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 대행하고 있음.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실무**

---

**발 행** 2007년 3월

**발 행 처** 소방방재청 평가관리팀

**참 여 자** 시설사무관 흥 철  
시설주사 배 상 원  
전 병 훈

**주 소**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T. 02-2100-5476  
F. 02-2100-5479

**인 쇄 처** 삼영D.P (02-725-6697)

---